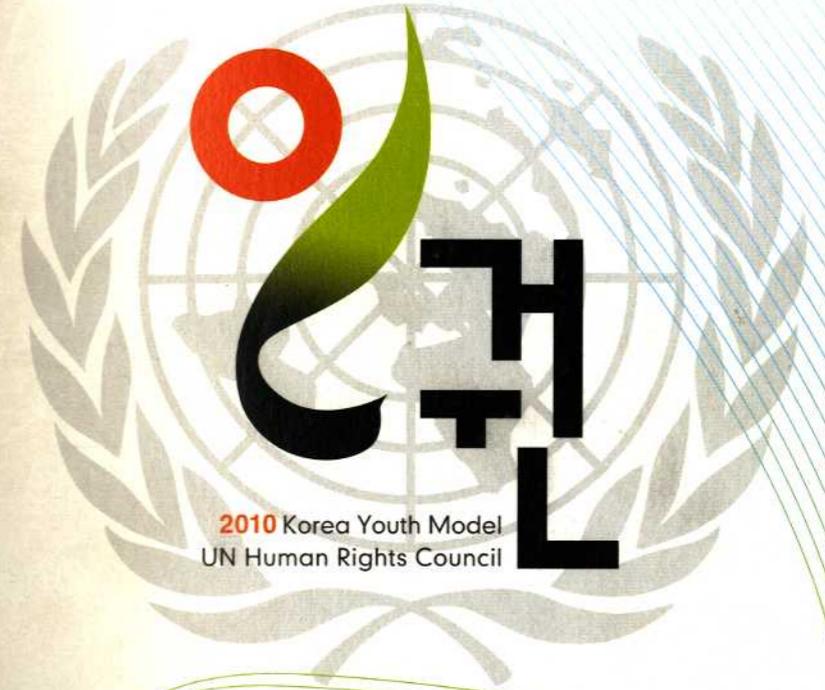


대한민국 청소년 모의 인권이사회 2010  
 Korea Youth Model UN Human Rights Council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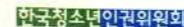
대한민국 청소년 모의 인권이사회 2010 Korea Youth Model UN Human Rights Council

# 대한민국 청소년 모의 인권이사회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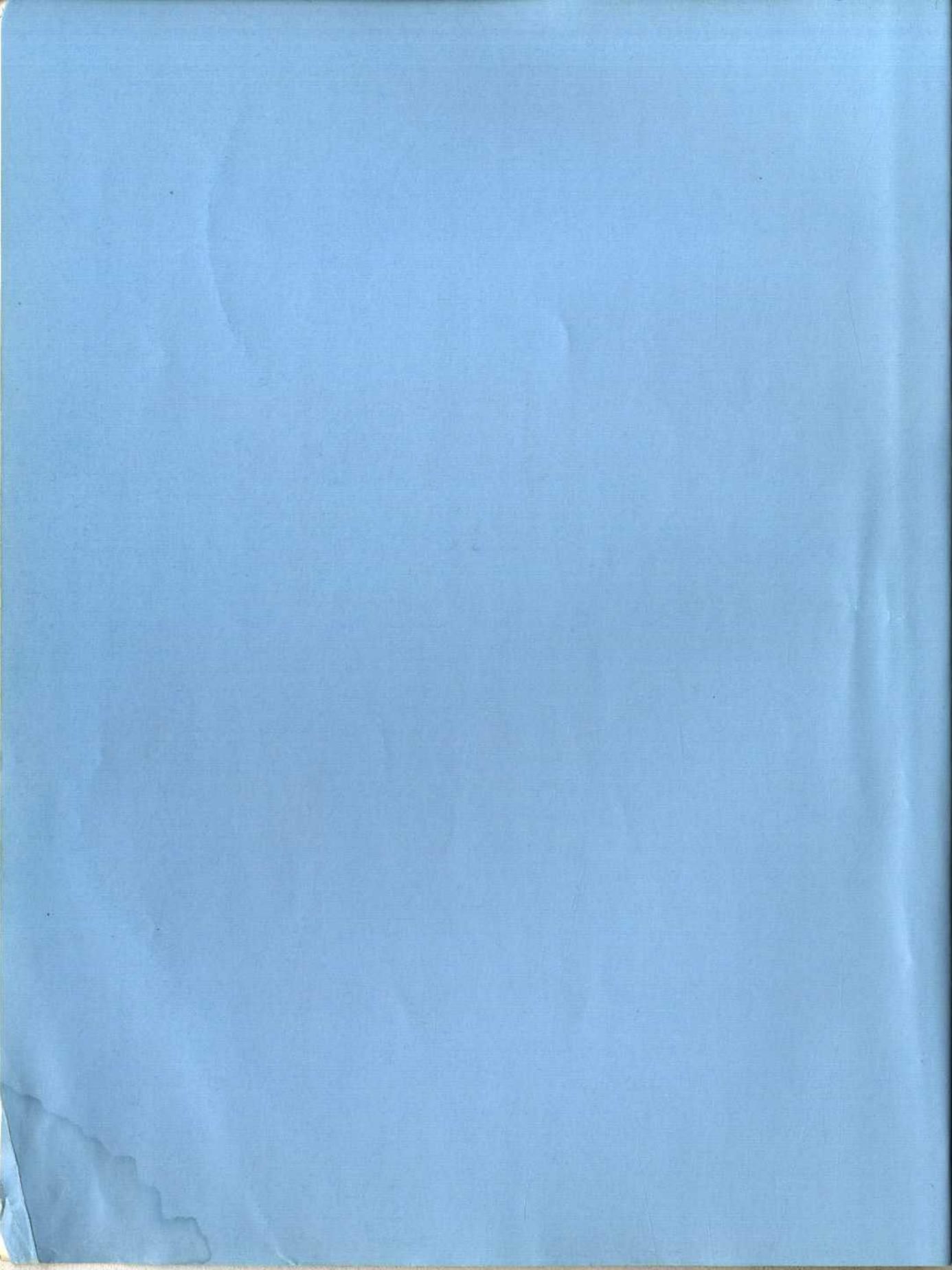


2010. 1. 26(화) 13:00 ~ 1. 28(목) 17:00  
 고려대학교 백주년기념관 및 법학전문대학원

주최  국가인권위원회  고려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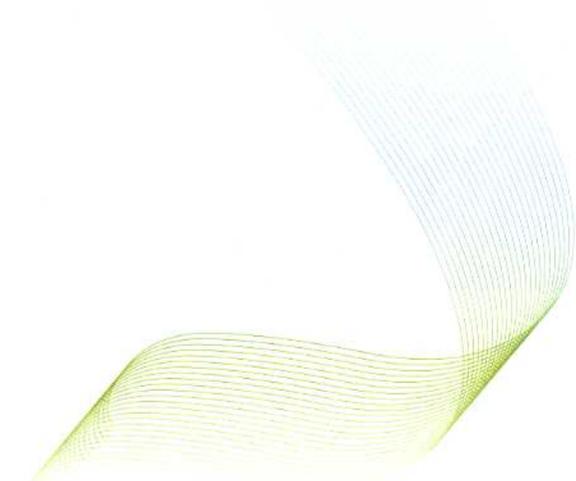
주관  KOCUN 유엔인권정책센터  한국청소년인권위원회

후원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가족부  EBS  삼성화재



청소년모의  
인권이사회

2010 Korea Youth Model  
UN Human Rights Council



**대한민국 청소년 모의 인권이사회 2010**  
Korea Youth Model UN Human Rights Council 2010

**목 차**

05\_ 인사말

10\_ 대회 일정 및 안내

15\_ 대회 운영절차 및 규칙

유엔 인권보호메카니즘 / 대회 프로그램의 목적 및 구조 / 프로그램별 운영절차  
보고서 및 결의안 작성방법 / UPR 참가국, 질의 주제 / 역할별 권한과 책임 / 회의 일반원칙

29\_ 의제별 실무그룹

의제별 실무그룹 명단 / 실무그룹보고서

67\_ 참가청소년 생활

참가청소년 생활수칙 / 숙소 배정

75\_ 부록 : 유엔 인권보장제도

#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함께 어우러지는 '다르게 함께 사는 세상'

안녕하십니까!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현병철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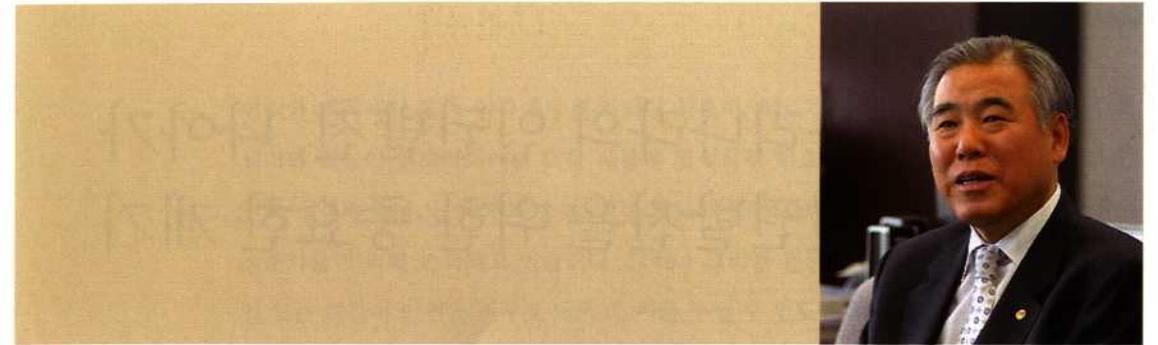
먼저, 우리 위원회와 고려대학교, 그리고 유엔인권정책센터가 '인권 선진국가'를 이끌어갈 글로벌 인권리더를 양성하는 「대한민국 청소년 모의 인권이사회 2010」를 공동으로 개최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청소년 인권 정책을 주관하는 기관으로서 이번 대회의 비전과 뜻을 이해하고 흔쾌히 협조해 주신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가족부, 두 기관에게도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무엇보다도 '대한민국 청소년 모의 인권이사회'에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석 해주신 250명 청소년 위원 여러분과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동스럽습니다.

청소년 여러분! 지난 60년간 우리사회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룩하였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나라들 가운데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가장 짧은 기간 동안에 동시에 달성하여 세계인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모범국가로 성장하였습니다.

이런 바탕위에서 인권영역에서도 빛나는 발전을 하였습니다. 10여년전만 해도 생소한 용어였던 인권은 이제 어린이에서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생활에서 '인권'을 요구할 정도로 일상의 언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인간다운 삶'과 '지속가능한 사회'를 지향하는 21세기에서는 '인권수준'이 각 국가의 경쟁력을 측정하는 중요한 척도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반영하여 우리나라는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였고, 유엔은 2006년 3월 인권위원회(Commission on Human Rights)를 유엔인권이사회(UN Human Rights Council)로 격상하였습니다.

유엔인권이사회는 세계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한 우리나라도 유엔인권이사회의 이사국으로 선임되어 세계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해 기여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 특히 유엔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은 우리나라가 이제는 그동안 다른 나라들에게 빚진 고마움을 갚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세계 곳곳의 인권문제에 공감하고 이를 해결해 나가는 데 적극 동참해야 하며 후발국가의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책임감을 갖고 기여해야 할 것입니다. 유엔으로부터 받은 도움을 갚아야 하겠습니다. 이런 활동이 대한민국을 진정한 '인권 선진국'의 반열에 오를 수 있도록 하며, 세계인들의 존경을 받는 품격 있는 국가로 만들 것입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 선진국가', 세계인들의 존경을 받는 '품격 있는 국가'를 이끌어갈 인권리



더를 청소년시기부터 양성하기 위해 '대한민국 청소년 모의 인권이사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청소년 모의 인권이사회는 청소년 스스로 참여하여 세계적 인권이슈에 대해 토론하면서 인권패러다임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과 국제적 감각을 습득하고 인권감수성을 함양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유엔 인권이사회 절차에 따라 세계적 인권이슈에 대한 논의를 함으로써 국내외적 인권현실을 직시할 수 있고, 인권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과 국제적 감각을 습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청소년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청소년 여러분 스스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인권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토론하면서 인권에 대한 청소년 여러분 스스로 다양한 담론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이번 대회가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토론을 통한 선의의 경쟁이 불가피하지만, 인권이 실현된 공동체는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서로 함께 어우러지는 '다르게 함께 사는 세상'입니다. 이것이 청소년 모의 이사회의 정신입니다. 청소년 여러분 스스로 서로 차이를 인정하면서 소통하고 연대하는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여러분! 대회기간 동안 인권을 향한 청소년 여러분의 주장을 세상을 향해 당당하게 소리내 보시기 바랍니다. 인권을 향한 청소년 여러분의 꿈을 한없이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의 생각만으로 세상을 바꿀 수는 없지만, 여러 사람이 같은 꿈을 꾸게 되면 세상은 바뀔 수 있다고 합니다. 청소년 여러분이 모두 함께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드는 꿈을 꾸다면 그 꿈은 실현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대회기간동안 여러분들이 보여주는 열정과 실천은 우리 사회 인권향상을 위한 큰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여러분! 국가인권위원회는 청소년 여러분들과 함께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대한민국 청소년 모의 인권이사회'에 관심을 갖고 응모한 모든 청소년에게 기회를 드리지 못한 점 아쉽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참석하신 의장단과 청소년 위원들께서는 함께하지 못하는 그 청소년들의 뜻도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대회기간동안 건강하고 유쾌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0. 1. 26.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현 병 철

# 우리나라의 인권발전, 나아가 인류사회의 인권발전을 위한 중요한 계기

201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모든 시작이 그렇지만, 21세기에 들어와 첫 10년을 보내고 맞게 되는 새해 아침은 특별한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선진국의 문턱에까지 와서는 그 문턱을 넘지 못하고 외환위기와 국제금융위기 등으로 좌절하던 우리가 이제는 원자력 발전소를 수출하는 선진국이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해방 이후 지난 65년간 우리나라의 발전은 괄목할만한 것입니다. 특히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동시에 성공시켰다는 점에서는 20세기에 가장 큰 성장을 보였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는 글로벌 시대의 중심에 서서, 변화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주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새로운 시대를 개척하는 선도자가 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발전의 후유증도 적지 않으며 이를 치유하기 위한 노력에도 소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오늘날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양극화 문제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저력은 어떠한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이를 빨리 극복하는 데서 나타나고 있으며, 현재의 국제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도 우리 민족의 저력은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실업의 문제, 특히 고용 없는 성장의 문제 등으로 인한 양극화의 심화는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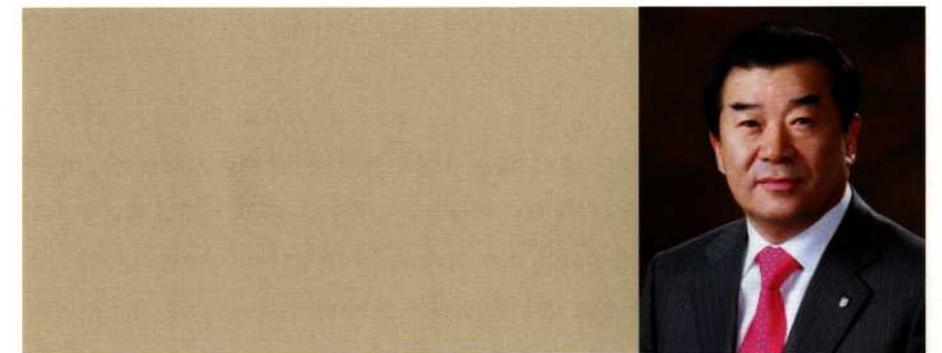
그밖에도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점, 우리가 함께 고민해서 풀어야 할 문제점들은 무수히 많습니다. 특히 우리 모두가 서로 힘을 모아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성취했던 경제발전이나 민주화 못지않은 중요성을 갖는 것이며, 지나친 경쟁의 논리에 휘말려 우리 사회를 약육강식의 정글로 만들게 될 경우에는 우리 모두가 불행해질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모든 인간에게 부여되어 있으며, 서로가 항시 존중해야 하는 '인권'의 의미와 기능이 현대사회에서 더욱 새롭게 활성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인권의 성격과 내용, 구체화의 방식, 법적 제도화 등에 관한 많은 문제들이 세계의 수많은 전문가들에 의해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전문적 논의에 앞서서 인권의 주체인 모든 인간이 인권을 피부로 느끼고, 이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를 위하여 인권이 생활화되도록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010년을 맞이하여 처음 개최되는 '청소년 모의 인권이사회'는 그런 의미에서 매우 특별한 중요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 여러분이 인권의 여러 중요한 쟁점들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고, 토의하며, 나아가 이를 실제 문제의 해결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인권발전, 나아가 인류사회의 인권발전을 위하여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노력 없는 결실은 없습니다. 청소년 여러분의 노력이 더해졌을 때, 비로소 이 행사의 의미가 살아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진지한 고민, 뜨거운 땀방울을 통해 이 행사의 의미가 참가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의 인권 발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초석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인권에 대한 여러분의 관심과 열정에 격려를 보냅니다.

고려대학교 총장 이 기 수



## 국제사회의 인권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인권리더로 성장할 수 있기를...

청소년들이 주체가 되어 인권을 논하는 자리인 '청소년 모의 유엔인권이사회'에 참석하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유엔의 인권보호시스템은 인권이사회 설립을 계기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지난 2006년 3월 유엔총회는 결의안 60/251에 따라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산하 유엔인권위원회(Commission on Human Rights)를 총회 산하 유엔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로 승격시켰습니다. 이는 인권의 중요성에 대한 자각일 뿐만 아니라 인권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유엔의 강한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엔인권이사회의 격상과 새로운 인권보호메커니즘인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는 국제적 인권기준 설정에서 나아가 그 이행을 촉구함으로써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인권은 평화, 정의, 환경 그리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함께 유엔차원에서는 21세기 모든 인류가 추구해야 할 가치임을 확인하고 192개의 유엔 회원국에게 최고의 가치로 권고하면서 그의 프로그램화를 권장하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은 유엔인권이사회의 이사국으로써 그 국제적 지위와 역할이 급속도로 성장해 왔으며 국제적 인권무대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오고 있습니다. 한국의 젊은 세대들이 미래 국제인권 무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는 국제적 인권기준이나 인권이슈에 대한 인식과 인권감수성이 부족한 것 또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유엔인권정책센터(KOCUN)는 유엔의 인권제도에 대한 국내의 인식저변을 확대하고 주요 국제적 인권이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인권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2005년 설립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제네바 유엔인권인턴쉽을 비롯한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오늘 국가인권위원회, 고려대학교가 주최하는 청소년 모의 유엔인권이사회의 주관기관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청소년 모의유엔인권이사회의 주체인 청소년은 그동안 미성숙하고 보호받아야 할 존재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러나 1989년 채택된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아동, 청소년의 권리주체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늦었지만 한국사회에서도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청소년들이 직접 권리주체로서 자신들의 인권을 얘기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행사는 우리의 청소년들에게 의미 있는 도전이자 기회입니다. 우리의 청소년들이 국제인권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국제사회의 인권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차세대 인권리더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단법인 유엔인권정책센터 이사장 박경서



# 대한민국 청소년 모의 인권이사회 2010

Korea Youth Model UN Human Rights Council 2010

- 일 시** 2010. 1. 26(화) 오후1시~1,28(목) 오후5시
- 장 소** 고려대학교 백주년기념관 및 법학전문대학원
- 참 가 자** 청소년 250명
- 의 제** 정보프라이버시권 / 안락사 / 군가산점 / 미등록(무국적)아동인권 / 청소년 집회 · 결사 자유
- 지 원** 대회참가증명서, 숙박 및 식사 지원
- 시 상** \* 실무그룹별 우수팀 (총10팀, 20명)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상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상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상 시상  
\* 우수 실무그룹 (2그룹)\_ 부상(문화상품권) 지급

## 세부일정

일 자	시 간	프 로 그 램	장 소
1월 26일(화)	12:00~13:00	등록	법학신관 5층 대강당
	13:00~14:00	오리엔테이션	"
	14:00~15:00	개회식	백주년기념관 국제회의장
	15:00~18:00	의제브리핑	법학신관 5층 대강당
	18:00~19:00	저녁식사	교우회관 식당
	19:00~21:00	청소년인권을 말하다(인권교육활동)	법학신관 5층 대강당
1월 27일(수)	08:00~09:00	아침식사	기숙사 식당
	09:00~11:00	의제별 실무그룹(Working Group) 1차 회의	법학신관 세미나실
	11:00~13:00	의제별 실무그룹(Working Group) 2차 회의	"
	13:00~14:00	점심식사	교우회관 식당
	14:00~15:30	의제별 실무그룹(Working Group) 3차 회의	법학신관 세미나실
	15:30~16:00	휴식	"
	16:00~18:00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실무그룹 사전준비회의	"
	18:00~19:00	저녁식사	교우회관 식당
1월 28일(목)	08:00~09:00	아침식사	기숙사 식당
	09:00~12:00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실무그룹회의	법학신관 5층 대강당
	12:00~13:00	인권이사회 1차 본회의	"
	13:00~14:00	점심식사	교우회관 식당
	14:00~16:00	인권이사회 2차 본회의	법학신관 5층 대강당
	16:00~17:00	심사평 및 시상, 폐회식	백주년기념관 국제회의장

\* 숙박은 고려대 안암기숙사

## 개회식

- 일 시: 2010.1.26(화) 14:00 ~ 15:00
- 장 소: 고려대학교 백주년기념관 국제회의장
- 참석자: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 상임위원, 고려대학교 총장 · 교수, 교육과학기술부 · 보건복지가족부 등 관계기관 · 단체 인사, 대회참가 청소년 250명
- 세부일정  
\* 사회: 김한나(전북 상산고등학교), 주정호(서울국제고등학교)

시간	세부내용	진행
14:00	대회기 계양	박귀란(한영외국어고), 배정환(민족사관고), 허세민(한국외대부속외국어고)
14:00~14:05	개회선언	
14:05~14:10	대회 취지	
14:10~14:15	국민의례	
14:15~14:25	개회사	현병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14:25~14:35	환영사	이기수 고려대학교 총장
14:35~14:45	축사	보건복지부 장관 축사
14:45~14:50	참석 귀빈 인사 소개	
14:50~15:00	의장단 인사 및 대회참가자 결의	
15:00	일정안내 및 개회 종료	

## 의제 브리핑

\* 의제에 대한 청소년들의 이해 · 분석 · 비판 역량을 향상하기 위해 인권적 관점에서 각 의제를 분석하여 주요 이슈 등 논의할 쟁점 등을 제시함.

- 일 시: 2010. 1. 26(화) 15:00 ~ 18:00
- 장 소: 고려대학교 법학신관 5층 대강당
- 주요순서

시간	세부내용	진행
15:00~15:15	전체 의제 개요	이성훈(국가인권위원회 정책교육국장)
15:15~15:45	안락사	장영수(고려대 법과대학 교수)
15:45~16:15	군가산점	김화숙(국가인권위원회)
16:15~16:30	휴식	
16:30~17:00	미등록 아동 인권	김수산(국가인권위원회)
17:00~17:30	정보프라이버시	박성훈(국가인권위원회)
17:30~18:00	청소년 집회 · 결사 자유	정상영(국가인권위원회)

**청소년 인권 마음열기**

※ 경쟁만이 아닌 참가 청소년 상호간 마음열기와 친교, 인권교육활동 진행(청소년 모의 인권이사회 프로그램의 차별화)

- 일 시: 2010. 1. 26(화) 19:00 ~ 21:00
- 장 소: 고려대학교 법학신관 5층 대강당
- 주요순서

시간	세부내용	진행
19:00~20:00	몸 마음열기	이두성 한예중 연극원 강사
20:10~21:00	1. 내가 만드는 학생인권규정 2. 편지쓰기	※ 모자이크 벽돌활동 김민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과

**인권문화한마당: 생생인권 토크쇼**

※ 음악을 통한 소통과 연대, 우리 사회 인권현안을 바라보는 관점과 자세에 대한 토크(쇼 형식으로 진행)

- 일 시: 2010. 1. 27(수) 19:00~21:00
- 장 소: 고려대학교 법학신관 5층 대강당
- 주요순서

※ 사회: 김민아(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과)

시간	세부내용	진행
1부 19:00~20:00	축하공연	선생님밴드
	소통과 대화	조국 인권위원( 참가 청소년 설문 '만나보고 싶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2부 20:00~20:50	축하공연	노래패 '참 좋다'
	생생토크쇼	〈인권위, 스스로 지킨다〉 학벌 없는 사회 광주모임 박고형진 / 스태크래다운 소모뒀 / 대구참교육학부모회 김정금 / 수원고2 이광명
마무리 20:50~21:00	축하공연	스탑 크랙다운 공연

**시상 및 폐회식**

- 일 시: 2010. 1. 28(목) 16:00 ~ 17:00
- 장 소: 고려대학교 백주년기념관 국제회의장
- 참석자: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상임위원, 고려대학교 총장·교수, 교육과학기술부·보건복지가족부 등 관계기관·단체 인사, 대회참가 청소년 250명
- 심사 평가 위원: 30명(국가인권위원회 현병철 위원장·유남영 상임위원, 장영수 교수 등)
- 심사 평가 기준

① 우수팀 평가 기준

- 내용성 (85점): 쟁점분석 및 이해의 정확성, 사례 적시의 적절성, 논리구성의 체계성과 일관성, 결론도출의 설득력, 아이디어의 독창성
- 태 도 (15점): 발언 및 경청 태도, 합의조정 기여도, 팀워크, 적극적 참여도

② 우수 실무그룹 평가 기준

- 내용성 (70점): 의제별 실무그룹 결의안 완성도, UPR 결의, 권고안 완성도, 결의안 및 질의, 권고안의 독창성
- 태 도 (30점): 합의도출과정의 적절성, 그룹의 협동성, 적극적 참여도

○ 주요프로그램

※사회: 박문수(광주동성고등학교), 장유진(광주상일여자고등학교)

시간	세부내용	참여자
16:00	개회	
16:00~16:20	대회 심사평가 총평	· 팀별심사평: 장영수 고려대학교 교수 · 그룹심사평: 문경란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16:20~16:40	시상	팀별 시상 / 그룹별 시상
16:40~16:45	활동 되돌아보기	
16:45~16:50	격려사	현병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16:50~16:55	격려사	이기수 고려대학교 총장
16:55~17:00	폐회선언	
17:00	참가자 기념사진촬영	

행사장 위치 및 동선



## 대회 운영절차 및 규칙

유엔 인권보호메카니즘

대회 프로그램의 목적 및 구조

프로그램별 운영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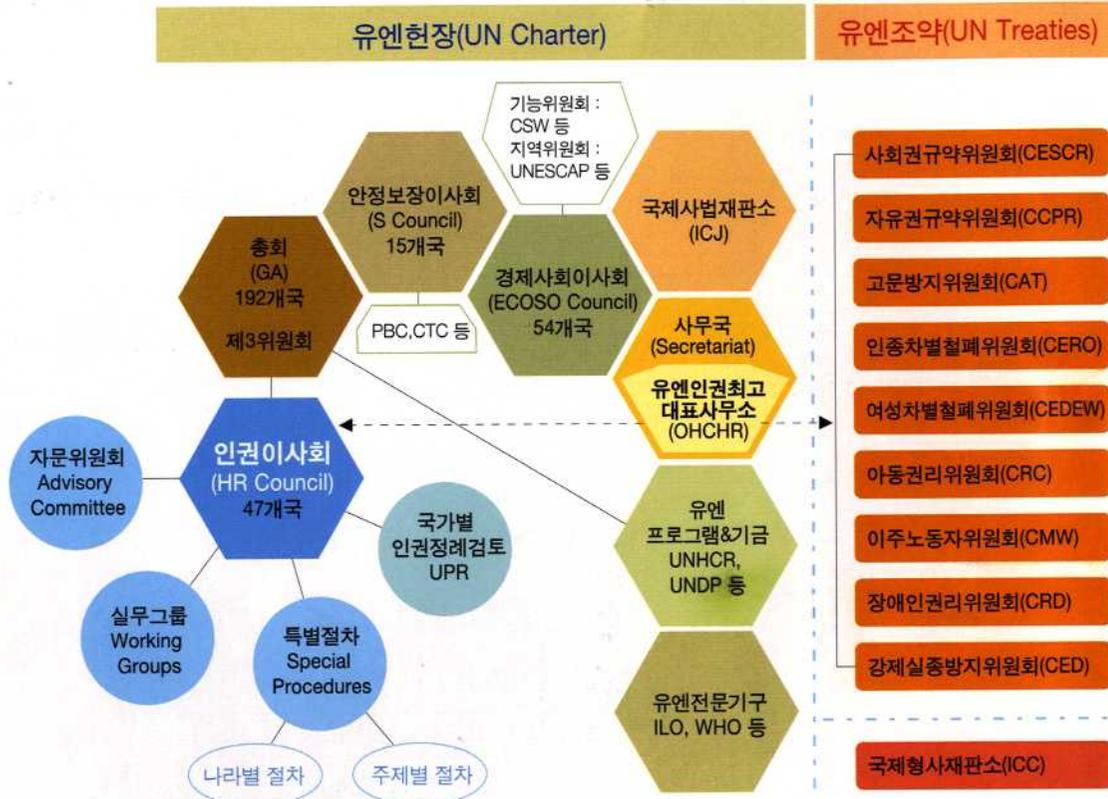
보고서 및 결의안 작성방법

UPR 참가국, 질의 주제

역할별 권한과 책임

회의 일반원칙

# ① 유엔 인권보호메카니즘



# ② 대회 프로그램의 목적 및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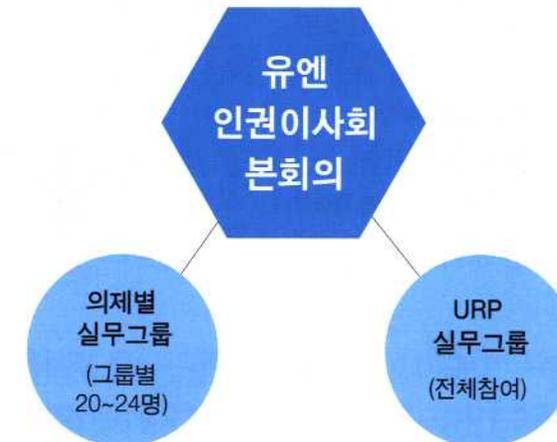
○ 프로그램의 목적

- 인권문제에 대한 논의 및 토론을 통해 인권감수성과 지식을 증진하고 유엔 인권메카니즘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 프로그램의 구조

- 프로그램은 유엔의 인권이사회를 모델로 하며, 본회의(Plenary session)와 실무그룹회의(Working Group)로 구성된다.

- 실무그룹(Working Group)은 의제별 실무그룹과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 UPR) 실무그룹으로 구분한다.



### 3 프로그램별 운영절차

#### 1\_ 의제별 실무그룹 1차, 2차, 3차 회의

27일\_ 09:00~ 15:30 ( 5시간 30분)

**목표 및 구성**

- 의제별 실무그룹은 의제별 결의안을 만들기 위한 회의로 각 그룹별 20~24명과 3명의 의장단을 포함해 27명 이하로 구성한다.

**진행절차 (총5시간)**

- 의제별 실무그룹은 특별보고관 Special Rapporteur (의장단 중 1인)의 보고서 발표(10분)를 시작으로 보고서에 대한 질의 및 답변 (20분) 찬반토론(1차 회의, 1시간 30분), 합의 및 결의안 마련(2, 3차 회의, 3시간 30분)의 시간 배정으로 진행한다.

보고서 발표 및 질의응답  
(특별보고관, 30분)

찬반토론  
(전체, 1시간 30분)

합의 및 결의안 마련  
(3시간 30분)

결의안 작성  
(의장단)

- 찬반은 팀의 신념이나 가치와 무관하게 당일 준비했기를 통해 정하며, 정해진 찬성/반대의 입장에서 일관성을 갖고 토론한다(역할토론).
- 찬반토론이 마무리 되면, 팀의 찬반입장 역할을 벗어나 인권관점에 기반한 실무그룹의 결의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한다.
- 전체 실무그룹의 의견이 합의되고, 결의할 내용들이 마련되면 의장단은 인권이사회에 제출될 결의안 초안을 작성, 대의장단에게 제출한다.
- 배정된 시간 이내 논의가 종결될 수 있도록 의장단은 각 시간 배정을 조정한다.

**발언시간 제한**

- 특별보고관의 보고서 발표는 10분 이내로 하고 각 실무그룹의 팀당 1회 발언시간은 2분이내로 한다.
- 각 팀 주장에 대해 다른 팀이 비판할 경우 그에 대한 팀의 재반론은 1회로 한정한다.
- 각 팀의 발언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해 그룹 내 동의를 얻어 총 횟수(예: 20회) 및 총 시간(예: 20분)을 제한할 수 있다.

#### 2\_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실무그룹 사전 준비회의

27일\_ 16:00~18:00 ( 2시간)

**목표 및 구성**

- 국가별 정례인권검토 실무회의는 심사대상국(한국정부)에게 던져질 질의와 권고를 마련하기 위한 사전 기획 회의로, 의제그룹별로 2개국을 대표해 2개 주제별(국가별 주제 배정) 질의와 권고 마련을 목표로 한다.
- 각 그룹별 2개국 2개 주제 질의, 권고로 인권이사회 20개 국가에 의한 20개 주제에 걸친 질의, 권고안을 마련한다.

자유토론 ⇒ 합의도출 ⇒ 심사국에 대한 질의 및 권고 내용 마련 ⇒ 대표 질의자 선정

**진행방법(총2시간)**

- 대회추진위(사무국)은 20개 주제 및 20개 참가국을 선정 후, 대회 전까지 실무그룹 당 2개국 2주제를 배정한다.(※UPR 참가국 질의주제 23쪽 참조)
- 토론은 자유롭게 진행하며, 심사대상국에 질의할 내용이나 권고내용을 작성한다.
- 질의의 내용은 2008년 5월 7일 당시 유엔 UPR 실무분과에서 실제로 질의된 내용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되 현재의 시점에서 주제와 관련된 내용을 추가하여 현실을 반영하도록 한다.
- 질의나 권고 내용이 합의되면 1개 주제별 대표질의자 1인을 선정하는데(각 실무그룹당 2개 주제, 2인의 대표질의자), 대표질의자는 질의 및 권고내용을 정리하여 사무국에 27일 19:00 까지 제출한다.

**자유토론시 발언시간 제한**

- 발언시간은 실무그룹의 발언시간 제한과 동일하다(2분).
- 각 팀 주장에 대해 다른 팀이 비판할 경우 그에 대한 팀의 재반론은 1회로 한정한다.
- 각 팀의 발언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해, 그룹 구성원의 동의를 얻어 총 횟수 및 총 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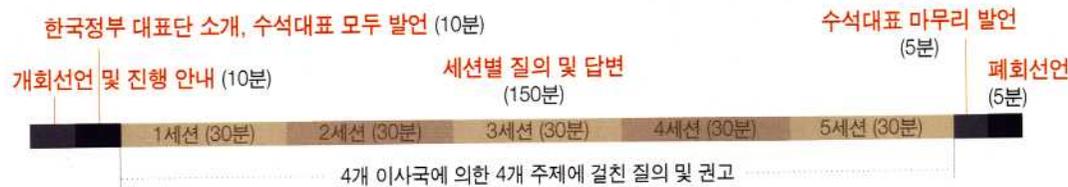
## 프로그램별 운영절차

### ③\_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실무그룹 회의

28일\_ 09:00~12:00 (3시간)

#### 목표 및 구성

- 2010년 UPR 실무분과의 심사대상국(대한민국 정부)의 인권상황을 점검하고, 개선책을 마련한다.
- 심사대상국(대한민국 정부)과 20개 이사국 및 3인의 의장단 및 보고자(Troika)로 구성된다.
- 대한민국 정부의 대표단은 수석대표 1명과 담당 관계부처 대표 6명, 1개 이사국 대표단은 10~15명으로 구성된다.



#### 진행방법(총3시간)

- UPR 실무그룹회의는 모두 5개의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되며, 각 세션마다 4개의 이사국 대표가 질문을 한다.
- 각 세션별 심사는 30분, UPR 실무그룹회의는 총3시간으로 한다.
- UPR 실무그룹의 의장단/보고자(트로이카)는 3인으로 구성되며, 3인은 각 세션을 교대로 나누어 진행한다.
- 각 세션은 4개국의 이사국 질의(개별 질의 2분 30초 이내, 총 10분), 심사국 답변(10분), 추가질의 및 답변(10분)으로 진행한다.
- 각 이사국의 질의 및 권고는 이사국 대표질의자에 의해 발언되며, 4개의 질문이 제기된 후 정부 대표단은 네 개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일괄적으로 한다.
- 정부대표단은 2008년 5월 7일 당시 유엔 UPR 실무분과에서의 한국정부 대표단의 답변 내용을 최대한 반영하되 새로운 질문의 경우 정부입장을 고려하여 답변한다.
- 심사국 정부대표의 답변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표질의자는 추가질문을 할 수 있다. 시간 제약상 추가질문은 최대 3개로 제한한다.
- 5개 세션이 종료되면 트로이카는 UPR 실무그룹회의에서 제시된 질의와 답변을 정리하여 보고서 및 권고안을 작성한다.
- UPR 실무그룹 트로이카는 작성된 보고 및 권고안 초안을 심사국(한국정부 대표단) 및 참가국 대표에게 배포한다.
- 트로이카는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 및 반영하여 인권이사회 본회의에 제출한다.

### ④\_ 인권이사회 1차, 2차 본회의

28일\_ 12:00 ~ 16:00 (3시간)

#### 목표 및 구성

- 의제별 실무그룹회의와 UPR 실무그룹회의의 결과를 공식적으로 채택한다.
- 전원이 모두 참석한다.



#### ○ 의제별 결의안 채택 절차 및 방법

의제별 실무그룹 결의안 발표 (5분) → 표결

- 대의장단은 결의안 초안을 취합·정리하여 28일 본회의 전에 참가자에게 배포하고, 표결에 부쳐질 순서를 정한다.
- 의제별 실무그룹 의장은 자신의 의제별 실무그룹에서 마련한 결의안을 발표한다 (5분 ⇒ 총 50분).
- 의제별 실무그룹 결의안에 대해서 추가질문 2회(회당 1분 이내, 그룹별 1회만 가능)와 그에 대한 답변(회당 1분 이내)을 할 수 있다 (4분 ⇒ 총 40분)
- 결의안은 만장일치에 의한 채택을 원칙으로 하되 표결 요청이 있으면 표결을 실시한다.
- 본회의의 대의장은 "만장일치로 채택하시겠습니까? 표결하시겠습니까?" 라고 모든 참가자의 의사를 묻는다.
- 만장일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 표결에 부친다. 표결은 거수로 한다 (1개팀 1개표 행사).
- 재적 과반수 찬성이 이뤄지면 가결이며, 과반수 이하면 부결이다.
- 하나의 결의안이 처리되면, 동일한 방식으로 다른 결의안을 발표·채택해나간다.

#### ○ UPR 보고 및 권고안 채택 절차와 방법

UPR 보고서 및 권고안 상정 (UPR의장, 15분)

⇒ 당사국 의견표명 (한국정부수석대표, 15분)

⇒ 참가국 의견 (10분)

- 본회의는 UPR 실무그룹의 심사에 대한 보고서 및 권고안 채택을 한다.
- 본회의의 대의장의 요청에 따라 UPR 트로이카는 보고서와 권고안을 상정한다.
- 대의장은 "UPR 의장은 나와서 UPR 보고를 상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UPR 트로이카는 UPR 심사 경위와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면서 "~ 상정합니다" 라고 한다.
- 한국정부 수석대표는 보고서 및 권고 내용에 대한 공식 입장(수용, 재확인/검토, 불수용 등)을 밝힌다 (15분).
- 한국정부 의견표명에 대해 참가국은 의견을 표명하는데 각 세션별 1개국 대표질의자로 모두 5개국 대표가 발언한다. (5개국 한정)

## 보고서 및 결의안 작성 방법

### 1. 특별보고관 보고서 구성안 (200자 원고지 15매 이내)

- a. 배경(이슈의 중요성)
- b. 개념 정의
- c. 쟁점 (3-5개 정도)

### 2. 의제별 실무그룹 결의안 구성안

- I. 도입: 회의진행일, 수입사항 등
- II. 세션의 구성
  - a. 개회: 의장의 오프닝 요약정리
  - b. 참가자 소개(참가자 리스트를 부록으로 작성)
- III. 진행절차의 요약
  - a. 주제에 대한 논의내용
- IV. 결정
  - a. 결정
- V. 부록

### 3. UPR 실무분과 보고서 구성안

- I. 서론
  - a. 회의 진행일
  - b. 참가자 및 근거 자료
- II. 검토과정의 진행에 대한 요약
  - a. 심사대상국의 발표
  - b. 참가국과 심사국 대표단의 상호대화와 질의응답
- III. 결론 및 권고안

## UPR 참가국, 질의 주제

	참가국	질의 그룹	주제	정부내 담당부처	정부 답변자
세션 1	이집트	정보 프라이버시권1	국제인권기준/조약 수용 및 이행 (조약 비준 및 유보조항 철폐 등)	외교통상부 / 법무부	수석대표
	필리핀	정보 프라이버시권 1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과 효과성 강화	행정안전부	
	루마니아	정보 프라이버시권 2	교육권과 인권교육	교육과학기술부 국가인권위원회	
	프랑스	정보 프라이버시권 2	양심적 병역 거부자	국방부 / 법무부	부처 대표1
세션 2	코스타리카	안락사 1	사형제	법무부	
	케냐	안락사 1	자의적 구금과 고문	법무부 / 행정안전부	
	인도	안락사 2	집회와 결사의 자유	법무부 / 행정안전부	부처 대표2
	체코	안락사 2	난민과 무국적자	법무부	
세션 3	미국	군가산점 1	표현의자유 (국가보안법)	법무부 / 행정안전부	
	북한	군가산점 1	사이버에서의 사생활 보호	법무부 / 행정안전부	부처 대표3
	알제리	군가산점 2	사회보장권 (건강권 포함)	보건복지가족부	
	중국	군가산점 2	아동 인권 (교육권 제외)	보건복지가족부	
세션 4	우크라이나	미등록아동인권 1	주거권	보건복지가족부	부처 대표4
	스위스	미등록아동인권 1	장애인권	보건복지가족부	
	멕시코	미등록아동인권 2	노인 인권	보건복지가족부	
	카메룬	미등록아동인권 2	노동 인권	노동부	부처 대표5
세션 5	인도네시아	청소년 집회 결사 자유 1	이주노동자 (미등록노동자 포함)	노동부 / 법무부	
	폴란드	청소년 집회 결사 자유 1	결혼이주여성	여성부	
	영국	청소년 집회 결사 자유 2	여성 인권과 남녀평등	여성부	부처 대표6
	브라질	청소년 집회 결사 자유 2	성소수자	여성부	

## 4 역할별 권한과 책임

### 1 청소년 의제별 실무그룹 위원

- 청소년 의제별 실무그룹 위원은 2인 1팀으로 구성된다.
- 청소년 의제별 실무그룹 위원은 모든 회의에서 자유롭게 발언할 권리를 가진다. 단, 발언의 공평성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대회운영규칙에 의해 발언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 청소년 의제별 실무그룹 위원은 의장단의 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이의가 있을 시에는 의사진행발언이나 쪽지를 통해 전달한다.

### 2 의제별 실무그룹 의장단

- 의장단은 3인으로 구성된다.
- 3인 가운데 1인은 특별보고관의 역할을 수행한다.
- 의장단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효율적인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며, 결의안이 산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의장단 역할은 보고서 작성, 출결체크, 의사진행, 의사진행지원, 회의 의사록 작성, 발언 시간 체크, 결의안 작성, 결의안 발표 등이다.
- 의장단의 세부 역할은 의장단 구성원 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한다.

### 3 의제별 실무그룹 특별보고관

- 특별보고관은 실무그룹 회의에서 의장단이 준비한 보고서를 발표한다.

### 4 UPR 실무그룹과 의장단/보고관 (트로이카)

- UPR 트로이카는 3명(의장 1인, 부의장 2인)으로 구성한다.
- UPR 트로이카는 실무그룹의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사진행, 의사록 작성, 보고서 및 권고안 준비 및 본회의 상정의 역할을 수행한다.
- 진행에 대한 세부 역할은 UPR 트로이카 구성원 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한다.

### 5 UPR 심사국(한국정부) 대표단

- 한국정부대표단 수석대표 1인과 관계부처 대표(외교통상부, 법무부, 국방부, 여성부, 노동부, 보건복지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로 구성된다.
- UPR 실무그룹 참가국 질문에 대해서 한국정부의 입장에서 답변하고, 권고안의 수용여부를 결정하여 표명한다.
- 한국정부대표단 수석대표는 모두발언, 마무리발언, 본회의에서 한국정부 권고안의 수용여부를 표명하는 역할을 한다.
- 관계 부처 대표는 자신의 부처에 관계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한다.

### 6 인권이사회 본회의 대의장단

- 대의장단은 의장1명과 부의장 2명으로 구성되며, 실무그룹 의장단 중 민주적인 방법으로 선출한다.
- 대의장단은 청소년 모의 인권이사회 본회의에서의 결의안과 보고서/권고안이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절차에 의해 채택되도록 진행하는 책임을 지진다.
- 대의장은 청소년 모의 인권이사회 본회의의 의사진행 담당, 부의장은 의사진행 지원, 표결 확인, 회의의사록 작성, 발언 순서 및 시간 체크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 5 회의 일반원칙

### 1. 회의 개최 및 속개

- 회의를 개최하거나, 속개할 때 의장단은 각 팀 위원이 모두 참가했는지를 확인한다.
- 의장은 청소년 위원들이 모두 참석하고, 착석했을 때, 개회나 속개를 선언한다.

### 2. 휴식

- 의장은 그룹 구성원의 동의를 얻어 잠시 휴식을 선언할 수 있다.
- 단, 1회 휴식 시간은 10분을 넘지 않도록 한다.

### 3. 발언의 원칙

#### (1) 발언 및 발언권

- 의장은 발언의사를 밝힌 팀의 발언순서를 정해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단, 그룹구성원 모두가 그 순서 지정이 합리적이고, 민주적이며, 공평하다고 동의되도록 해야 한다.
- 의장의 지정에 따라 발언권을 얻어야만 발언할 수 있으며, 한 명의 의사에 의한 일방적인 발언이라도 팀의 발언으로 평가된다.

#### (2) 발언의 제한

- 한 발언에는 한 가지 쟁점만 담는다.
- 각 회의별 발언 시간을 준수한다.

#### (3) 의사진행발언

- 의사진행에 있어 이의가 있거나,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라고 발언하거나, 의장단에게 의사진행과 관련된 쪽지를 전달할 수 있다.
- 의사진행발언에 대해 의장은 그룹구성원 모두의 의견을 들어 결정한다.

### 4. 회의예절

#### (1) 경어사용의 원칙

- 회의진행 중에는 정확하게 의장단일 경우 '의장' '부의장' 으로, 청소년 인권위원일 경우 '팀명', '팀의 ○○○님', '○○○인권위원님' 으로 한다.
- 회의진행이 아닐 경우에는 '팀명' 이나, '○○○인권위원' 으로 호칭한다.

#### (2) 경청의 원칙

-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타인의 발언에 대해 경청해야하며, 팀원 간의 대화가 필요할 때에는 작은 소리로 짧게 하거나, 필담으로 한다.
-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회의장 내 휴대폰 사용, 사진촬영은 허용하지 않는다.

#### (3) 차별적 발언 금지의 원칙

- 발언에 있어 사회적 약자 및 상대팀을 무시하거나 차별적인 발언을 하지 않도록 한다.

#### (4) 기타

-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인터넷 검색은 허용되지 않는다.
- 회의 중 문서의 일부를 인용할 수는 있으나, 문서 그대로를 읽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회의도중 자리를 떠야하는 경우에는 팀원에게 알려야 하며, 팀 전체가 부재하게 될 경우에는 부의장에게 알려야한다.

### 5. 회의장 내 질서

- 회의장 내 모든 질서유지에 대한 권한과 책임은 의장단에게 있다.
- 위의 회의원칙을 위반하였을 시에는 의장단은 해당 팀에게 '경고' 를 줄 수 있으며, 구성원의 동의하에 발언권을 제한하는 벌칙을 줄 수 있다

## 의제별 실무그룹

의제별 실무그룹 명단

실무그룹보고서

# 군 가산점

## 제 1 실무그룹

이름	소속	팀명
<b>의장단</b>		
김민경	경주여자고등학교	
이은주	부천여자고등학교	
조한준	상산고등학교	

### 청소년인권위원회

이다영	영신여자고등학교	2.Y.O.U
한수아		2.Y.O.U
조규석	서라벌고등학교	곧은 소리
한동훈	서라벌고등학교	곧은 소리
윤을정	목동고등학교	모굴이
장영민	양정고등학교	모굴이
류환입	대전과정고등학교	보리
성예람	대전과정고등학교	보리
김이슬	부산국제외국어고등학교	오프라윈프리
김산희	부산국제외국어고등학교	오프라윈프리
정소연	호산고등학교	키루스
한우림	호산고등학교	키루스
서준호	민족사관고등학교	a priori
권수현	대원외국어고등학교	a priori
이상욱	부천고등학교	HUMRIGS
오창수	부천고등학교	HUMRIGS
박준철	철원고등학교	Justice
김철한	철원고등학교	Justice
윤태진	경남창원토월고등학교	Sanctuary
김보미	중흥고등학교	Sanctuary

## 제 2 실무그룹

이름	소속	팀명
<b>의장단</b>		
신성식	이사벨고등학교	
송성한	달구벌고등학교	
김주은	경산하양여자고등학교	

### 청소년인권위원회

강근희	서일여자고등학교	강친
정영은	서일여자고등학교	강친
설서현	건국대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너나우리
서지연	건국대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너나우리
이주원	대구경화여자고등학교	뤼미에르[lumiere]
조혜민	대구경화여자고등학교	뤼미에르[lumiere]
김형준	다산고등학교	비나리
장호성	다산고등학교	비나리
장주성	서울방송고등학교	비를 사랑한 소금인형
권오선		비를 사랑한 소금인형
이동훈	환일고등학교	비상
이용명	환일고등학교	비상
한결	산마을고등학교	산마을 키비처
윤고운	산마을고등학교	산마을 키비처
함민지	동두천외국어고등학교	소노루스
임혜정	동두천외국어고등학교	소노루스
권혁성	한가람고등학교	정의의 마지노선
최유진	한가람고등학교	정의의 마지노선
박상희	한영외국어고등학교	HHR
이석영	한영외국어고등학교	HHR
예다진	부산국제외국어고등학교	Logos(로고스)
조은누리	부산국제외국어고등학교	Logos(로고스)

# 미등록(무국적) 아동인권

## 제 1 실무그룹

이름	소속	팀명
<b>의장단</b>		
남채경	서문여자고등학교	
양상훈	경주고등학교	
이수연	서울국제고등학교	

### 청소년인권위원회

이지수	부평여자고등학교	부평여고
김은선	부평여자고등학교	부평여고
허재호	대구외국어고등학교	아우름
박지원	대구외국어고등학교	아우름
이미경	경기외국어고등학교	엠네스티
장민경	경기외국어고등학교	엠네스티
김현동	삼괴고등학교	전인권 만세!
정재화	삼괴고등학교	전인권 만세!
박석준	성안고등학교	카르페
장일훈	성안고등학교	카르페
오정현	경화여자고등학교	투피스
김준영	백마고등학교	투피스
권신지	서울국제고등학교	혜음
김린예	서울국제고등학교	혜음
신해성	서울국제고등학교	Dikaiosyne
주정호	서울국제고등학교	Dikaiosyne
문소희	호남제일고등학교	Dior
이승연	호남제일고등학교	Dior
이서우	서울광남고등학교	S.W.H.M
추혜민	서울광남고등학교	S.W.H.M
표영신	광주진흥고등학교	The dream of attorney
송혜원	광주수완고등학교	The dream of attorney

## 제 2 실무그룹

이름	소속	팀명
<b>의장단</b>		
이효진	한국외대부속외국어고등학교	
장채윤	테레사여자고등학교	
허세민	한국외대부속외국어고등학교	

### 청소년인권위원회

김경미	인천명신여자고등학교	가온누리
강유미	인천명신여자고등학교	가온누리
양현정	목동고등학교	느낌표!
이정민	목동고등학교	느낌표!
장경진	동두천외국어고등학교	상상나래
장인경	동두천외국어고등학교	상상나래
정해원	서일고등학교	선남선녀
김소현	서일여자고등학교	선남선녀
김윤수	서울국제고등학교	세계로 미래로
곽온별	서울국제고등학교	세계로 미래로
이재석	효원고등학교	인재지
김지웅	효원고등학교	인재지
이찬양	광주진흥고등학교	잠자리
장현우	광주진흥고등학교	잠자리
이정훈	대원외국어고등학교	컴투게더
김유빈	대건고등학교	컴투게더
심주연	세화여자고등학교	푸른 별밤
김지선	세화여자고등학교	푸른 별밤
백수민	서강고등학교	한울
김태경	서강고등학교	한울

# 안락사

## 제 1 실무그룹

이름	소속	팀명
<b>의장단</b>		
김성은	인천국제고등학교	
김진서	경북외국어고등학교	
박뿌리	백양고등학교	

### 청소년인권위원회

황은경	부천여자고등학교	넉덕이들
김수연	부천여자고등학교	넉덕이들
김명선	인천원당고등학교	두리하나
심성희	인천원당고등학교	두리하나
이순봉	서울태릉고등학교	블루칩
이준봉	서울태릉고등학교	블루칩
주현경	통영여자고등학교	비아
강류경	통영여자고등학교	비아
이석현	백석고등학교	생강
정다원	백석고등학교	생강
권하은	호수돈여자고등학교	입들
이은호	호수돈여자고등학교	입들
심효진	영덕고등학교	춘철살인
안수현	영덕고등학교	춘철살인
박영휴	강동고등학교	IKY
정현도	강동고등학교	IKY
이항	태안고등학교	T-SURN
김영현	태안고등학교	T-SURN
정숙현	부산외국어고등학교	YWP
한정화	부산외국어고등학교	YWP
백수민	서강고등학교	한울
김태경	서강고등학교	한울

## 제 2 실무그룹

이름	소속	팀명
<b>의장단</b>		
박다원	영신여자고등학교	
박채영	하남고등학교	
유서영	대진여자고등학교	

### 청소년인권위원회

정태성	광주동성고등학교	논리
박문수	광주동성고등학교	논리
한예슬	금촌고등학교	누리봄
박강연	금촌고등학교	누리봄
정아람	동국대사범대학부속여자고등학교	삶앳(사람)
김자명	동국대사범대학부속여자고등학교	삶앳(사람)
정상규	태장고등학교	파랑새팀
박지은	태장고등학교	파랑새팀
박종민	강서고등학교	폭풍 간. 지.
윤상엽	강서고등학교	폭풍 간. 지.
양혜리	반송고등학교	A.K.F
하수원	반송고등학교	A.K.F
황윤성	대전외국어고등학교	DFLHS
이선정	대전외국어고등학교	DFLHS
권순재	영파여자고등학교	E.Y.E.S
박향	영파여자고등학교	E.Y.E.S
김가영	부산국제외국어고등학교	L.O
이한솔	부산국제외국어고등학교	L.O
김보성	도림고등학교	Oxygen
송슬비	경화여자고등학교	Oxygen
조단비	하남고등학교	WENUS
박다은	하남고등학교	WENUS

# 정보프라이버시

## 제 1 실무그룹

이름	소속	팀명
<b>의장단</b>		
박정연	송덕여자고등학교	
전세정	개포고등학교	
정상목	구봉고등학교	

### 청소년인권위원회

김해솔		골든리쿤
김형우		골든리쿤
김한나	상산고등학교	나비잠
김형은	상산고등학교	나비잠
안병훈	대진고등학교	너나우리
신재호	서라벌고등학교	너나우리
이지수	아탑고등학교	미르
정신호	성남서고등학교	미르
최성경	성심여자고등학교	아성인
이민경	성심여자고등학교	아성인
배우리	서울국제고등학교	우리나
서리나	이우고등학교	우리나
신민철	수원조원고등학교	파놉티콘
도덕현	동탄반송고등학교	파놉티콘
김신혜	일신여자고등학교	핍진(漣眞)
정현지	일신여자고등학교	핍진(漣眞)
이동훈	중동고등학교	JADE
최승혁	중동고등학교	JADE
이진양	효문고등학교	T.G.D
윤성훈	효문고등학교	T.G.D
정희은	경북외국어고등학교	Youthful Zest
이지홍	경북외국어고등학교	Youthful Zest

## 제 2 실무그룹

이름	소속	팀명
<b>의장단</b>		
김미나	가정고등학교	
김민주	운천고등학교	
김현진	구봉고등학교	

### 청소년인권위원회

황은진	인천국제고등학교	공존
양지애	인천국제고등학교	공존
김예인	부여여자고등학교	국희
심지은	부여여자고등학교	국희
나선정	상일고등학교	딸기맛사탕
이후건	소사고등학교	딸기맛사탕
김나래	선일 이비즈니스고등학교	바른소리
김소영	선일 이비즈니스고등학교	바른소리
임윤지	광문고등학교	세.바.토.달
권성욱	광문고등학교	세.바.토.달
권민지	효원고등학교	이크발
송선영	효원고등학교	이크발
신동범	진건고등학교	지식인사랑
박성현	진건고등학교	지식인사랑
김진영	광주제일고등학교	지행합일
나정훈	광주제일고등학교	지행합일
이성인	상산고등학교	필로테스
함효진	경상여자고등학교	필로테스
김현태	수원고등학교	HRC-HD
이동준	울산중앙고등학교	HRC-HD

# 청소년의 집회 및 결사의 자유

## 제 1 실무그룹

이름	소속	팀명
<b>의장단</b>		
구경모		
나현경	부명고등학교	
이슬기	부명고등학교	

### 청소년인권위원회

이름	소속	팀명
조해진	용인고등학교	넛지
서민주	용인고등학교	넛지
노성호	백석고등학교	시베리아 야생 수컷 호랑이
심주용	백석고등학교	시베리아 야생 수컷 호랑이
이현지	백신고등학교	아고라
이상미	안곡고등학교	아고라
오슬아		청춘불패
안예린	대진여자고등학교	청춘불패
신혜규	대원외국어고등학교	클레멘시아
김동광	대원외국어고등학교	클레멘시아
민지홍	환일고등학교	파오휴
양경철	환일고등학교	파오휴
김유진	광주상일여자고등학교	Article B
장유진	광주상일여자고등학교	Article B
손광현	중동고등학교	Endless
표세윤	중동고등학교	Endless
조경민	보정고등학교	JB
최정아	보정고등학교	JB
김예림	청주일신여자고등학교	T.I.N.G
한임연	청주일신여자고등학교	T.I.N.G

## 제 2 실무그룹

이름	소속	팀명
<b>의장단</b>		
박귀란	한영외국어고등학교	
장한빛	한영외국어고등학교	
주미영		

### 청소년인권위원회

이름	소속	팀명
홍부일	서울광성고등학교	1210
오유상	서울광성고등학교	1210
김슬기	동남고등학교	가온
장재은	동남고등학교	가온
이진희	중앙여자고등학교	마이티마나
김주현	고려대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마이티마나
류한수	이화여대사범대학부속이화금란고등학교	아고라
심인우	이화여대사범대학부속이화금란고등학교	아고라
이진규	작전고등학교	인권신수설
김준영	작전고등학교	인권신수설
안태민	강원고등학교	자유바람
이세령	춘천고등학교	자유바람
전진영	성지고등학교	Coma
김성진	성지고등학교	Coma
조현아	거제육포고등학교	J.H.R
김혜지	거제육포고등학교	J.H.R
김은서	과천여자고등학교	OL4U
송유진	과천여자고등학교	OL4U
손다혜	대일외국어고등학교	voice of daeil
신승희	대일외국어고등학교	voice of daeil
이광명	수원고등학교	야옹야옹
조만성		야옹야옹

# UPR 의장단

## UPR 의장단

이름	소속	팀명
<b>보고관</b>		
김희주	성심여자고등학교	
정유정	수주고등학교	
조재연	현암고등학교	

### 한국정부

김현경	성심여자고등학교
배정환	민족사관고등학교
유소영	명신여자고등학교
정창우	민족사관고등학교
조은영	명신여자고등학교
차형일	부천고등학교
최동녘	하남고등학교

# 군 가산점

## 제 1 실무그룹 보고서

작성 : 의장단 김민경, 이은주, 조한준

### 1. 논란 배경

1999년 12월 23일, 헌법재판소에서는 공무원 임용 시험 시 제대 군인에게 만점의 3~5%가량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대군인 지원법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다. 군 가산점 제도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린 이후에도 군 가산점을 둘러싼 논쟁은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가산점 규모를 2%인 절반으로 줄이고, 합격자의 20% 한도 내에서 혜택을 주기로 하며, 가산점 혜택의 횟수를 3~6회로 제한하기로 한 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해 많은 논란이 되고 있다. 제대 군인의 사회 복귀를 위한 제도적 지원으로서 군 가산점 제도가 정당하다는 주장이 있으며, 이에 반해 병역의 의무를 면제 받는 여성과 장애인 등에 대한 고용상의 불평등이라는 주장도 있다.

### 2. 개념 정의

군 가산점제이란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군 복무기간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해주기 위해 취업 시 과목별로 시험 득점에 5%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 제대군인에 대한 사후적인 복리 후생 방안으로 군복무기간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하기 위해 취업 시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이다. 1998년 7급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였으나 군가산점에 의해 탈락한 여성과 장애인이 제기한 헌법소원에 의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을 내리면서 폐지되었다.

국방의 의무란 헌법 제39조 제1항에 명시된 국민의 의무로서 납세의 의무와 함께 국가가 국민에게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2대 의무의 하나이다. 또한 헌법 제39조 제2항은 병역의 의무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한 처우를 금지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병역이란 국방의 의무 이행의 한 종류로서 군대에서 일정기간 복무함을 의미한다. 병역법 제3조 제1항에 의거하여 남성은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여성은 지원에 한하여 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

### 3. 쟁점 사안

#### (1) 의무 이행에 대한 보상의 적절성

찬성 측은 입장은 헌법 제11조 제1항<sup>1)</sup>의 평등권 조항을 인용하여 병역법이 남성에게만 병역의 의무를 부과한다는 점에서 헌법에 명시된 성별에 따른 차별 금지의 원칙을 지키고 있지 않으므로, 군 복무 기간 동안 표현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등 여러 기본권의 침해 받을 군 제대자는 군 복무를 하지 않은 여성, 장애인 등에 비하여 불공평한 처우를 받았다는 점에서, 그들에게 일정 정도의 가산점을 부여하여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산술적 평등이 아닌, 불공평한 대우를 받은 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비례적 평등을 달성하는 것이다.

하지만 반대 측은 입장은 국방의 의무<sup>2)</sup>는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어 전시 등의 유사시 여성 또한 국민의 일원으로서 보급, 간호병 등으로 전투에 참여하며, 병역의 의무는 신체적, 사회적 여건에 의거하여 남성에게만 부과되는 것이므로 정당한 '성구별' 이지 '성차별'로 볼 수는 없고, '보상'이라는 단어 선택에 있어서 본래 '보상'이라는 법률 용어는 국가가 공적인 행정 업무 등으로 국민이 입은 재산상의 피해를 전보(填補)할 때 사용하는 용어이므로, '의무 이행에 대한 보상'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못하고, 오히려 병역의 의미는 국민의 의무, 그 자체로서의 신성함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 (2) 본 제도의 상징성

찬성 측은 본 제도가 현 군 복무자의 제한된 개인적 권익을 보전해주며, 사기를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제도라는 점과 본 제도의 존재를 통하여 병역 의무 면제자 및 국민들에게 군복무자에 대한 존경과 감사라는 심리적 효과를 거두는 선연적,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밝힌다.

반대 측은 본 제도가 병역 의무 면제자에 대한 차별적인 제도라는 상징성이 강하며, 군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본 제도의 유무(有無)라기 보다는 사회 고위지도층과 유명인의 병역 비리와 군내 시설의 열악함 등 때문이라고 본다.

#### (3) 본 제도의 적절성

찬성 측은 본 제도가 현 국내 상황을 고려할 때, 제대 군인의 경우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라 할 수 있는 시간을 기본권이 제한된 군대 내에서 수년을 보내야 하기에 병역면제자에 비하여 취업을 위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적다는 점, 본제도 이상의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에 국가 재정이 넉넉하지 못하다는 점, 과거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을 받은 지원 대책에 비하여 현재 재발의 된 군 가산점 제도는 그 수준이 미약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 혹은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을 소지가 적다는 점, 최근 여론조사 결과<sup>3)</sup> 여성의 절반가량이 군 가산점 제도에 찬성하여 전 국민의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든다.

반대 측은 제대 군인에 대한 지원은 필요하지만 여성, 장애인 등의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전제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며, 군 제대자를 위하여 가산점 이외의 응시 연령 상향 조정, 제대 중 국민연금 전액 국가 지원 등의 방안이 이미 시행되고 있고, 아무리 적은 가산점이라 하더라도 소수점 영 점 몇몇에 의하여 합격의 당락이 좌지우지되는 시험의 특성 상 불합리하며, 본 제도는 제대군인 전반에 걸친 지원이라기보다는 군 제대자 중 공무원 시험 응시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므로 군 제대자에 대한 지원이라는 본 제도의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 (4) 본 제도의 평등권 침해 소지

찬성 측은 본 제도가 군 복무 기간 동안 기본권의 제한을 통하여 개인적 희생을 감수하여야 했던 군 제대자에게 사회에 조속히 복귀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주고, 군 복무 기간 동안 비복무자에 비하여 상실한 학업, 생업을 위한 시간 등을 평등적 관점에서 지원해 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대 측은 본 제도가 여성, 장애인 등 비복무자에 대한 차별을 전제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미 세계적으로 여성, 장애인 인권 수준이 하위에 머무는 한국 사회의 인권 상황을 더욱악화시켜 이들의 평등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 (5) 본 제도에 관한 개선 방안

찬성 측은 만약 여성과 장애인에 대한 평등권이 큰 걸림돌이 된다면 이들에게 적합한 사회봉사제도를 마련하여 지원을 받아 대체 복무하도록 하여 동일한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하자고 주장한다.

반대 측은 남성은 의무이고, 여성은 지원으로 한다면 시작부터 불공평하며, 사회봉사제도는 오히려 다른 사람의 일자리를 빼앗는 꼴이며, 가산점을 주기 위한 대체복무제 보다는 가산점 제도의 폐지와 기타 군 제대자 지원 방안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한다.

1)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2) 제39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3) 한국일보 2009년 10월 9일자 "여성의 경우 군 가산점 제도를 찬성한 이들은 지난해(53.8%)보다 7.2%p 줄어든 46.6%였다."

# 군가산점

## 제 2 실무그룹 보고서

작성 : 의장단 김주은, 송성현, 신성식

### 1. 배경

남북이 분단되어 있는 유일한 냉전체제 국가인 우리나라는 1961년부터 국가기관을 비롯한 민간기업 채용에 군필자에 대한 가산점을 부여하는 군가산점제도를 시행해왔다. 이는 군필자에 대해 군복무 기간 동안의 불이익한 각종 손실들과 시간 비용 및 기회비용을 포함 신체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에 대한 상대적인 공백을 메우는 보상의 장치로, 한편으로는 강제에 의한 군대징병을 거부하는 재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의 입대를 독려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그러나 인권신장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90년대, 남녀평등의 원칙 위배를 비롯해 가산점으로 인한 채용 차별 등 불평등을 야기시킨다는 점을 들어 1994년 6월 이화여대 교수와 학생 약 2천여명이 가산점 제도의 시정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대통령에 제출하는 등, 여성과 장애인이 주축이 되어 1998년 10월 헌법소원을 제기한다. 1년 후, 헌법재판소는 군 가산점제도에 위헌결정을 내리며 약 40년간 지속되어오던 군 가산점제도는 곧 폐지에 이르게 된다.

군 가산점제도 폐지 이후 병무청은 물론이요, 당시의 군복무자 그리고 예비 군복무자 등이 혼란을 겪고 있을 무렵, 연예인과 기업가 자녀들의 비리를 통한 병역면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다. 이로 인해 그동안 알게 모르게 숨겨져 왔던 병역 비리의 실체가 밝혀지며 소위 '뺨 있으면 가지 않고, 뺨 없으면 군대 간다' '병역의무는 2년이라는 시간만 낭비할 뿐' 과 같은 군복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퍼지게 되어 군의 전체적 사기가 낮아지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에 주성영 국회의원은 '군필자가 6급 이하의 공무원시험에 지원 시 가산점을 지원' 하는 새로운 형태의 군 가산점 제도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병무청에서도 기존 5%에서 완화된 2~3% 가산점 부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힘으로써 다시 한번 군 가산점 제도 부활 논란에 불씨를 지피기 시작했다.

그러나 군 가산점 제도에 대한 이견차가 상당한 만큼 새롭게 사회적 합의를 이루고 법으로 재개정되기까지는 갈 길이 멀어 보인다. 더욱 심해진 취업난 속에서 군 가산점 제도의 부활이 여성 및 장애인의 사회적 진출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물론, 남녀평등 사회로의 진입을 위한 노력이 전개되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서 남성과 여성의 신체적 차이를 인정하고 평등한 관계를 이루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며 여성은 병역의무에 상응하는 출산 및 대부분 육아의 부담을 안고 있다는 주장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반면에 현대 사회의 저출산화에 비추어 보았을 때 신체적 차이를 통해 남성의 징집제와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헌법 39조 2항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의 하위법인 병역법 3조 1항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헌법과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한다. 여자는 지원에 의하여 현역에 한하여 복무할 수 있다' 에 근거 실질적으로 헌법의 범주에는 여성과 남성 모두를 포함하나, 현재는 남성만이 강제성을 띤 병역의무에 해당되기에 군필자에 최소한의 보상장치가 되어야 하고, 앞서 언급한 군복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미 위헌판결을 내린 법안을 다시 부활시키겠다는 것은 역사의 후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만큼 군 가산점제는 서로를 차별한다고 느끼기 보단 다름으로, 차이로 인정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한다. 여전히 당사자인 현 군복무자들과 예비 군복무자 등은 병역의무 이행을 통한 처우가 너무도 빈약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견차가 무엇보다도 큰 만큼 하루 속히 군 가산점 제도가 아니라도 사회적 합의를 통한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 갈 필요가 있겠다.

### 2. 개념 정의

#### 군가산점 제도

한국 정부는 1961년부터 국가기관을 비롯한 민간기업 채용에 군필자에 한하여 가산점을 부여하는 군 가산점 제도를 시행해왔다. (백과사전, 블로그, 뉴스, 100분토론)

1999년 12월까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법률(법률 제5482호)에 따르면 취업보호실시기관(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학교, 공·사기업체 또는 공·사단체)이 채용 시험을 실시할 경우 제대군인은 필기시험에서 만점의 5% 범위안에서 가산점을 얻어 왔다. 단 6개월~18개월 복무하였던 방위병, 28개월 가량 복무하였던 공익근무요원은 3%를 받았다. 그러나 공익근무요원은 1995년 1월 1일 시행되었으며, 가산점을 적용받았던 공익은 거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방위병은 복무기간이 짧기 때문에 3%였지만, 공익은 육군보다 2달 길었기 때문에 이 점도 위헌 판결에 한 몫이 되었다. (Wikipedia)

#### 대체복무 제도

징병제를 실시하는 국가에서 군복무 대신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일하는 것으로써 군복무를 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 (백과사전)

### 3. 쟁점

#### (1) 군가산점 제도가 가져오는 성별 차이의 불평등 요소

본 제도는 국가를 위해 대한민국 남성들이 의무적으로 이행해야하는 군복무제에 대해 남성들의 시간적 손해와 육체적 고통에 대한 보상을 하자는 의견에서 출발하여 현실적인 대책을 위해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고안되어졌다. 그러나 남성들은 의무에 반해 여성들은 군복무에 대해 사회적인 시선이라든지 체격조건이 불리하기 때문에 군복무에 대해 대다수가 참여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남성들에게는 2년간의 시간의 보상이 되지만 같은 취업을 목표로 하는 20대의 여성들에게는 오히려 불평등 요소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여성부에서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의견이 적잖아 있었고 여러 여성 네티즌 사이에서도 많은 논란을 일으켰다.

지원에 따라 군복무를 하는 일부 여성을 제외하고는 병역의무를 지지 않는 대다수의 여성과 장애인이나 신체상의 이유로 병역이 면제된 남성은 여전히 제외된다는 점

아래는 지난 12월에 여성부에서의 의견이다.

반면 여성부는 "위헌성이 있는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다시 위헌소송을 제기하는 등 적극 대응할 것" 이라고 밝혔다.

아래는 공무원 시험을 앞둔 한 여성 네티즌의 의견이다.

행정고시를 준비하기위해 몇 년을 공부하는데 군가산점 제도가 도입되면 같은 성적이라도 가산점 때문에 여자들의 취업이 힘들어집니다. 보통 입사 시험이라든지 공무원 시험들은 1점 2점의 차이로 합격과 불합격이 결정이 나는데 이 제도로 인해 더 많은 남자들이 취업의 문에 다가설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평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성복무제를 많이들 언급하시는데 여자들은 신체적으로 남성보다 많이 약합니다. 그러므로 여성 군복무를 하더라도 비효율적입니다. 또한 여자가 군인이라고 하면 주위 사람들의 시선들은 대개가 여자가 무슨 군대를 이라면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봅니다. 따라서 여성 군복무제도는 알맞지 않으며 필요하다면 군가산점제 이외의 방안을 구축해야할 것입니다.

군복무라는 하나의 남자들의 권리로 군가산점을 누릴 시에는 여성들은 가산점을 원해도 얻지 못하는 점에서 불평등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따라서 여자와 남자의 성적인 신체적 차이와 사회적 시선을 지울 수 있는 방안을 본 제도에 보충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군가산점 제도는 정책으로 수립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본다.

### (2) 군가산점 제도가 가져오는 사회적 약자 차별의 불평등 요소

대한민국 남성들 중에서도 군복무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 신체, 학력, 고아 그리고 혼혈 등 이러한 이유 때문에 군복무를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 따라서 여성과 마찬가지로 군가산점 제도에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봐야하는 시각은 이렇다.

신체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경우이다. 그들 중에는 군대를 다녀온 후 장애인이 된 남성들도 있을 것이고 그 전에 장애인이 된 남성이나 여성이 있을 것이다. 공무원 시험이나 일반 입사 시험에서는 장애인 할당제를 두어 장애인들 사이에서 경쟁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아래의 글은 한 장애인 네티즌의 글이다.

전 장애인이지만 군가산점제 찬성하거든요. 장애인이라고 군대 안간 사람들만 있는 줄 압니까? 저처럼 군생활 다하고 예비군 훈련까지 다 받고나서 교통사고 나서 장애인 된 사람들 천지입니다 근데 무조건 장애인을 위해서 장애인을 위해서라며 마치 장애인들 때문이라도 군가산점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장애인들 그런거 바라지 않습니다 저희는 편견없는 사회의 시선을 바라는거지 자신의 청춘을 희생한것가로 군가산점 1~2점 주는거....그거 폐지하자고 주장하는 사람 없습니다 다만 우리 장애인들 사이에서도 군필 미필이 있기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차이를 뒤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찬성의 뜻을 품고 있는 장애인 네티즌이지만 그가 걱정하는 것은 장애인 사이에서 일어날 차이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반 남성 여성의 차이뿐만 아니라 장애인들의 군필 미필의 차이에 대해서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학력과 혼혈 그리고 고아의 경우도 생각해야한다.

우리가 논의해야할 점은 이렇다. 군대를 갈 수 있는 일반인과 그렇지 못한 장애인에 대한 차이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할 것이고 장애인 중에서도 군필과 미필인 사람들에 대해서도 논의를 해야만 한다.

### (3) 군가산점 제도 외에 다른 대책방안

군가산점 제도를 보충하는 방안도 있겠지만 그 외에 방안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 지난 11월 19일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전국각지 로스쿨학생들을 뽑아 이석연 법제청장과 군가산점 제도에 대해 논의를 했다.

이날 로스쿨생들은 병역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의견일치를 봤지만 공무원시험 등에 가산점을 주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일치를 보지 못했다. 토론에 참여한 건국대 김형석씨는 "병역법에서 남성만 병역의무자로 규정하는 상황에서 군가산점제는 특혜가 아니라 국가차원의 배려와 보상"이라고 찬성의견을 피력했다. 반면 원광대 정관영씨는 "병역법 개정안이 그 대상과 범위의 축소로 실질적인 효과는 적으면서 여성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는 해결하지 못한다"며 재도입을 반대했다.

군가산점제도를 대신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들도 나왔다. 강원대 임송재씨는 '공공시설 이용시 감면혜택을 부여하거나 자동차 등 특별소비세를 감면하는 방안'을 제안했고, 건국대 주현열씨는 '여성사병지원근거를 마련하고 공공육아지원센터 등을 통한 여성 사회봉사활동 가산점을 남성군가산점과 병행하자'는 의견을 내었다. 이외에도 군면제자와 여성에게 국방세 등 세금을 더 부과하는 방안, 가산점과 경력산정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이날 이석연 법제처장은 토론회에 참가한 학생들과의 대화에서 "다른 대안이 없다면 가산점제를 부활하되 가산점비율을 1%정도로 최소화 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제처는 이날 참석한 학생들을 제1기 로스쿨 법제관으로 임명하고 국민불편법령개선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권용태 기자 kwonyt@lawtimes.co.kr - 출처 :인터넷 법률신문

이날 나왔던 의견을 정리하자면 특별 소비세 감면혜택과 여성대체복무제 등이 나왔다. 특별 소비세 감면 혜택 같은 경우는 다른 형태로 이전에 많이 언급되었었다.

한 가지 의견으로는 임금을 올리자는 의견이 있었다. 군인들의 현재 월급은 평균 약 7-10만원 수준이다. 하지만 그들의 노동과 훈련 시간은 약 12-16시간 정도이며 최저임금제에 도입을 한다고 해도 하루 최소 4만원은 받아야한다. 그 만큼의 월급을 받는다면 약 2년의 시간동안 군복무를 이행한 후에 일반적인 사회생활을 하기에 크게 부담 갖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국가의 예산이 부족하고 더 많은 세금을 올릴 수도 없는 상황이기에 불가능한 제도라고 본다. 그러나 특별 소비세 감면 혜택 같은 경우는 자동차나 일부 특수한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임금 인상대책보다는 부담이 덜 할 수 있다. 하지만 더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적잖아 있었다.

또 다른 의견으로는 여성 대체복무제이다. 남성들과 달리 여성들은 신체적 조건이 불리하고 사회적인 시선의 압박 때문에 군복무대신 사회봉사나 기타 일들을 의무적으로 돕자는 의견이었다. 그러나 이 의견에서는 군복무와 사회봉사의 질 차이에 따라 남성들이 불평등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으며 장애인이나 기타 사회적 약자들은 어떻게 대처할 지에 대한 부분이 빠져있어 보충이 필요하다.

이 부분에 대한 쟁점은 이처럼 다양한 대체 방안들이 있지만 더 현실적이며 모두가 평등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의견들을 한번 고안해보자는 것이다. 아니면 위의 의견들을 보충이나 수정해서 더욱 평등한 방안을 고안해도 좋다.

# 미등록(무국적) 아동 인권

## 제 1 실무그룹 보고서

작성 : 의장단 남채경, 양상훈, 이수연

### 1. 배경(이슈의 중요성)

최근 우리나라는 세계화에 따른 국제 결혼, 외국인 노동자, 새터민의 귀화 및 이주와 함께 다양한 인종들이 유입되고 있다. 국제결혼은 10년 전과 비교해서 약 3배 이상 증가했고, 총 결혼 건수의 10%이상을 차지한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외국의 이주민들이 한국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한국인과 결혼하게 되었고 대다수는 부모가 각기 국적이 다른 다문화가정을 이루며 살게 되었다. 하지만, 어느 것이든 급작스러운 변화가 생기면 그에 따른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다. 이로 인해 한국사회는 구성원이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인권침해의 사각지대로 빠르게 전개되어 가고 있다. 다문화 사회로 인하여 우리나라 거주 외국인이 100만명을 넘는 시대가 된 것에는 무엇보다 외국인 노동자가 급증한 이유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수많은 무국적 아동들이 있다.

그 동안 우리나라는 '세계일류의 단일민족'이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세계화에 물결 속에 민족적 경계선이 사라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러한 자긍심은 타민족의 배척이라는 부정적 단면도 지니게 되었다. 우리사회는 다문화주의 전통이 성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문화가정이라는 새로운 문화를 비자발적으로 맞닥뜨리게 되었다. 국제결혼이 성행하면서 대부분의 이주여성들은 불법으로 입국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생긴 아이들은 한국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국적을 가지지 못하게 된다. 하지만 더욱 안 타까운 것은 국제결혼 여성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현실로 인해 이들 자녀들도 '혼혈인' 심한 경우에는 '튀기' 등의 부적절한 용어로 불리고 있다. 게다가 한국에서 태어난 아동들의 경우에도 무국적아동으로 취급되며 기본적인 생계보장, 학업, 의료 및 보건, 문화 및 여가, 사회관계 형성 등의 권리와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 2. 개념 정의

현재 한국에서 국적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이주아동들의 경우는 크게 국제결혼 이민(이주)가정 자녀와 외국인 이주노동자(근로자)가정의 자녀, 그리고 새터민 가정 자녀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이주 아동이 직면한 문제점으로는 의사소통의 어려움, 문화차이, 사회적 편견, 합법적 제도의 결여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이중문화 대한 문화적 충격이다. 가족공동체의 이중 문화는 긴장과 갈등을 발생시키고 가정자체를 불안정하게 만든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더욱 갈등이 발생하는 이유는 서로가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지 못하고, 또 문화를 수평적인 관점에서 보지 않고 수직적인 관점에서 다른 하나의 문화를 내려 보기 때문이다. 또한 또 다른 문화에 적응해야 하는 이주아동은 익숙하지 않은 한국문화를 받아들이면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이러한 환경 속에서 사회성과 정체성 확립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둘째, 이중 언어에서 오는 언어 소통의 문제이다. 이주아동 중 서로 다른 나라에서 그들이 살아온 경우 사용하던 언어를 대신하는 언어를 쉽게 습득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구성원들 사이에 있어서 의사소통의 장애를 겪는다. 만약, 의사소통이 자유롭다면 자신의 감정변화를 표시하면서 대화를 통한 이해를 유도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언어로 인한 의사소통이 자유롭지 못하여 상대방을 이해하거나 자기를 이해시키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

셋째, 우리나라의 순혈주의 중시 풍토로 이주아동에 대한 사회적 편견 및 차별이 존재한다는 문제이다. 이주민 가족을 비정상적인 가족 등 사회문제의 원천으로 보는 시각이 잔존하여 불쌍하다고 보는 시각, 무턱대고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고 판단하는 시각, 불법

체류자가 대다수라고 보는 시각 등 잘못되고 편향된 선입관에 기초한 판단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이주아동들이 우리나라의 복지자원을 부당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오해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사회적인 편견과 개개인들의 차별이 계속적으로 지속될 경우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표출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넷째, 합법적 제도의 결여이다. 한국은 복잡한 국적법으로 인해 부모가 모두 미등록 이주 노동자인 경우 그들의 자녀들은 태어나면 불법 체류자가 된다.

대부분의 이주 아동은 그 부모가 불법체류 신분이었거나 벌금 및 경비 등 경제적 문제 등으로 인해 혼인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 어머니의 호적에 입적되어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된다.

### 3. 쟁점

#### (1) 이주 아동들에게 대한민국의 국적을 부여하여야 할까?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의 평등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러한 평등 원칙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아이들에게만 적용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대우와 인권침해 문제가 이제 그들의 자녀에게까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 출생의 이주아동은 국적을 가질 권리가 있다. 난민의 자녀나 서로 다른 국적의 부모 사이에서 태어나 미등록 상태로 자라는 아이들에게 더 이상 신분상의 불안정성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특히나 국제적으로 저 출산의 문제를 안고 있는 한국의 상황에서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에게 국적을 부여하는 것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인구학적 측면이나, 경제적 측면, 사회 복지적 측면에서 국민에게 상당한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아동을 방치 할 경우, 한국 사회에서 소외되어 상처 받은 아이들이 자라면서 한국 사회의 또 다른 갈등의 중심이 다양한 문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현재의 시점에서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에 대한 국적의 문제에 대하여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정책적 반영이 필수적이다.

#### (2) 모든 이주아동들에게 한국 아동들과 같은 동등한 교육권을 보장해야 할까?

현재 1만 명 이상의 이주아동들이 국내에 체류하고 있고 이 가운데 오직 일부부만 학교교육의 혜택을 받고 있다. 그러나 부모가 단속될 경우, 사실상 이주아동은 교육의 위기를 만나게 되며 보호의 부재 및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된다. 게다가 학교를 다니게 되어도 한국학생들로부터 조금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대우를 받으며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심한 경우에는 집단 따돌림 및 폭력을 당하기도 하여 정상적인 정서적 성장을 하지 못하게 된다. 이에 따라 한국정부는 오래전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 자녀의 인권(교육권)을 보장을 위한 행정 지침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이주노동자 자녀들도 초등학교 입학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었다. 그러나 한국학교를 6년 동안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이주민 노동자 개개인에 관한 기초적인 학습관리가 부족해 구구단이나 간단한 한글조차 익히지 못한 채 학교를 졸업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교육권 일부를 제외하고, 여전히 전반적인 이주아동권리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한국에서 태어나는 이주아동들의 성장과정에 많은 어려움을 주어 사회적 부적응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 (3) 이주아동에게도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해 주어야 할까?

대부분의 이주 아동은 외국인 등록증도 없어 건강보험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가족 전체가 의료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심하게 병을 앓더라도 비싼 병원비 때문에 병원에 갈 엄두조차 내지 못한다. 보건복지부는 2006년부터 의료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주민들을 위하여 지방의료원 등에서 무료진료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을 확대 실시하였으나 등록증에 있는 아동들은 실제

이 사업대상에서 제외된다. 게다가 걸음으로 드러나지 않아 알기 힘든 질병을 앓는 아동은 부모가 이를 관리해 줄 수 있는 여력이 없어 더 큰 질병을 앓기도 한다.

무국적이거나 불법체류 상태에 있는 경우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대부분의 이주아동은 외국인 등록증이 없기 때문에 건강보험에 대한 지식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가 의료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심하게 병을 앓더라도 값 비싼 병원비로 인해 병원에 갈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출산에 있어 많은 이주여성들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결과 이주아동에게는 출생할 권리조차 보장되지 않고 있다. 그 예로써, 미숙아를 출생한 이주노동자 부부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엄청난 병원비를 감당 할 수가 없어 아이를 포기한 사례를 들 수 있다. 정부에서는 비자가 없는 자들에게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1천만 원까지의 병원비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한국에서는 미등록자녀 이주아동들에게 보육지원 및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지 못하다.

〈참고문헌 : 김갑성(2006), 한국 내 다문화 가정의 자녀교육 실태 조사 연구,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건우(2006), 가족유형에 따른 가족기능 수행도 비교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정책대학원: 사회복지학전공 / 황상심(2007), 농촌지역 다문화가정 아동들의 언어 특성 연구, 대구대학교 대학원 / 박천웅(2008), 이주아동의 현실, 안산이주민센터〉

## 미등록(무국적) 아동 인권

### 제 2 실무그룹 보고서

작성 : 의장단 이호진, 장채윤, 허세민

#### 1. 도입

미등록 아동들은 UN이 발표한 UN국제아동협약에 의해 어떠한 의견이나 신분에 관계없이, 그리고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고 평등하게 존중받을 권리를 보장받고 있다. 이 협약은 국제 협약으로서 협약 당사국에 있어서 국내법과 동일한 법적 구속력을 지닌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주민이 유입되기 시작한지 2~30년 가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주아동에 대한 인권 보장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미등록 아동들은 국적 취득, 교육권, 의료권 등을 포함한 자신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2003년 이후 국제결혼이 해마다 7천~9천여 건씩 늘고 있다. 2008년 6월 기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에서 공개한 이주 아동·청소년(20세 이하)은 69,987명, 이 중 미등록 이주·아동 청소년은 8,259명이며, 2008년 4월 기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공개한 취약 이주 아동·청소년(초·중·고 재학생)은 1402명에 불과하다. 또한 2006년 12월 기준 법무부가 공개한 미등록 이주아동현황에 따르면 이주노동자 자녀인 이주 아동 중 국내 학교 유입 가능 인원 약 9,500명, 이 중 실제 국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1,574명('05.5)에 불과하다. 게다가 이주 아동, 청소년 관련 정부 정책은 '합법적 체류자의 자녀'만을 지원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숙민주의 원칙으로 인해 이주노동자 부모 사이의 자녀는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없기 때문에, 생산 기능직에 종사하는 이주 노동자 가족의 아동·청소년은 거의 전원이 불법 체류자인 셈이고, 이에 따라 그들은 사실상 교육권을 박탈당한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또한 법적 근거가 부실한 상황에서, 개선되고 있다고는 하나 아직 사라지지 않은 교육현장에서의 차별적 언행과 태도는 이주 아동 뿐만 아니라 '한국인이 아닌' 모두에게 적용되어 그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한국인으로써 올바르게 성장하는 데 장애로 작용되고 있다. 이들을 위한 관련 법규의 제정과, 근본적인 인식 개선은 진정한 다문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프랑스에서는 만 18세 이하 아이들의 학교 등록 절차에서 부모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부모의 신분이 합법인지, 불법인지가 무의미하며, 학교 입학에 관한 신청서만 제출하면 별도의 절차 없이 주소지와 가까운 공립학교에 배정받게 된다. 이 외에도 여러 선진국들이 미등록 아동들의 교육에 있어 정부적 차원의 실질적 법안 마련과 교육 현장에서의 차별 없는 의식 마련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이에 한국 또한 아동들의 인권 보호에 적극 동참해야함을 강력히 권고한다.

#### 2. 쟁점

##### (1) 특별법인 이주아동권리보장법을 시행해야하는가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의거하여 이주 아동의 인권을 우선하는 아동권리보장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과 이주아동 권리보장법이 제정되면 미등록 체류 중인 부모가 아이를 앞세워 체류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어 우려가 된다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한나라당 김동성 의원은 "우리나라는 유엔아동협약에 가입돼 있으나 협약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유엔아동협약에 의하

면 모든 아동은 피부색과 국적 등에 관계없이 교육권과 의료권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말했다.<sup>4)</sup> 반면 부모들의 합법적 체류를 위해 역이용 될 수 있다는 점과 국내 아동과의 형평성에 위배될 수 있다는 점에 미루어 '이주아동보호법'과 같은 특별법을 제정하지 않고 기존에 있는 개별법을 수정, 보완하자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주아동권리보장법(안)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주아동권리보장법(안)'의 내용은 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이주아동의 기본적인 권을 보호하고 차별 없는 생활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주아동'의 정의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부모를 둔 아동으로서 국내에서 90일 이상 거주한 자로 규정된다.

내용은 이주아동이 부모의 국적 등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하는 데 필요한 생활을 누릴 권리가 있으며, 이주아동을 포함한 아동의 이익이 국가 등의 아동 관련 정책 및 활동에 있어서 최우선으로 고려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법, 청소년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교육기본법, 의료급여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영유아보육법 등 아동관련 법령을 이주아동에 대해 차별없이 적용한다.

또 초·중등 의무교육을 무상으로 받으며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만으로 국내 학교에 전·입학할 수 있다.

이주아동이 전·입학한 학교의 교직원 등 '출입국 관리법' 조항에도 불구하고 이주아동의 신상정보를 보호해야 한다. 경제적 능력이 어려운 이주아동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국공립 보육시설의 경우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정부는 이주아동이 차별받지 않도록 다문화교육 및 계몽활동을 해야 한다.

또 >국내에서 출생한 이주아동 >국내에 입국해 계속해서 3년 이상 체류한 이주아동은 대한민국에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하며 이주아동은 외국인정책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강제퇴거를 당해선 안된다.

## (2) 이주아동 특별학급을 운영해야 하는가

경기도 교육청은 2006년경부터 안산과 시흥에 이주아동 특별학급을 개설해오고 있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주 아동 특별 학급 운영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 ① 이주아동에게 교육권을 보장하려는 노력이다.
- ② 이주아동들이 차별을 받거나 소외되지 않도록 한다.
- ③ 이주아동들이 필요로 하는, 그리고 그들에게 적합한 한국어 수업을 할 수 있다.
- ④ 특별히 한국문화 체험 등을 실시할 수 있고, 학교생활에 적응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 ⑤ 이주아동들의 다양한 문화적 특성과 배경을 살릴 수 있는 문화정체성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반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주아동 특별 학급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 또한 제기되고 있다.

- ① 한국 학생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기회가 적어진다.
- ②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학생들이 같은 반에 배정되면 한국어 및 한국문화 습득에 제한을 준다.

4) <<사라지는 아이들 (2) 국가브랜드위원회와 함께 하는 다문화특집 3부>> 기사제보나 보도자료는 master@mhj21.com 또는 070-8291-4555, 미술로 misul@mhj21.com 본 기사의 저작권은 문화저널21에 있으며,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③ 특별학급 설치가 특정 지역에만 한정되어 있어 학교선택권을 제한한다.

④ 출입국허가를 받지 못한 대부분의 이주아동들에게 그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가르치는 특별학급은 신분노출의 두려움을 심어준다. 따라서 이주아동들이 교육권을 아예 포기해버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⑤ 특별학급은 이주아동들의 신분과 거주지 등을 파악하고 이들을 모아 놓고 관리 및 통제하는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

## (3) 이주아동의 인권을 위해 <UN이주노동자권리협약>에 비준해야 하는가

현재 한국 내에 거주하고 있는 미등록 아동들의 인권은 그 부모의 체류상황에 따라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미등록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먼저 그 보호자인 이주 노동자들의 권리가 보호를 법적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UN이주노동자권리협약'이 있으나 한국은 이에 비준하지 않고 있다. 현재는 국내외적으로 동 협약에 비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신분 보장이 되지 않는 이주 노동자들이 협약에 따라 이를 악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협약 내용 중 이주 아동, 청소년들과 관계 깊은 조항은 다음과 같다.

제 24조.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은 모든 장소에 있어서 법률 앞에 사람으로서 인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 29조. 이주 노동자의 자녀는 성명, 출생 등록, 국적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제 30조. 이주 노동자의 자녀는 그 나라의 국민과 평등한 처우를 기초로 교육을 받을 기본적인 권리를 가진다. 그 사람이 공립 유치원 및 학교에 입학할 것을 요구할 때 부모 중 어느 한 사람이 체류 내지 취업이 불법이거나 취업국에서의 그 자녀의 체류가 불법임을 이유로 거부되어서는 안된다. 정책자료: 다문화 가족 미등록 이주 노동자 가족팀 현황자료

(<http://cafe.naver.com/hannarabinn/99>)

## (4) 이주아동을 지칭하는 별도의 용어가 필요한가

한국 특유의 혈연주의, 속인주의를 넘어 변화의 시점에서 생겨난 신조어가 '코시안(Korean+Asian)'이다. '코시안' 용어는 국제 결혼 자녀와 이주 아동의 차별성과 배타성을 극복하기 위해 안산 외국인 노동자센터에서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지금보다도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에 대한 인식 수준이 더욱 미비하던 불과 몇 년 전까지, 이 아이들은 '혼혈인' 혹은 '우리와는 다름'을 나타내는 경멸적인 용어로 불리었다. 그래서 이들의 인권을 지키고 '한국인과 동일하다'는 의미로 사용된 용어가 '코시안'이다.

이후, 전라북도교육청은 국제결혼 자녀를 뜻하는 '코시안'이라는 합성어가 편견을 불러일으킬 위험이 있다고 판단, 코시안을 대체 할만한 용어를 공모한 결과 채택된 용어가 바로 '온누리안'이다. 온 세상을 뜻하는 순 우리말 '온 누리'와 사람을 뜻하는 어미 'ian'을 붙인 합성어이다. 아시아 국제결혼가정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을 아우를 수 있다는 점에서 '코시안' 보다는 포괄적인 용어라 할 수 있다. '코시안'이나 '온누리안' 용어 모두 그간의 한국사회가 겪어온 일련의 변화 과정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주 아동들에 대한 인식이 진일보 한다면 이들을 부를 때 굳이 특정 용어를 지정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 하는 의문 또한 제기될 수 있다. 여기에는,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근본적으로 변화하지 못한, 그들은 '우리와는 다르다'라는 인식이 내재되어있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 (5) 이주아동 인권보다 자국의 결손가정/결식아동에 대한 지원이 우선되어야 하는가

'결손아동'에서 '결손'은 부족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결손아동이란 어느 한 부분이 절대, 상대적으로 타인에 비해 부족한 아동을 말한다. 장애 아동, 결식 아동, 빈곤 아동 등이 이에 속한다. 모든 아동들은 인권을 보장받아 마땅하나 해당국 정부의 입장에서 자국

아동들의 일정 생활수준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우선순위에 대한 논의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자국 아동의 빈곤은 아동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사회의 미래는 아동들이 기본적인 권리와 물질적 지원을 향유할 때 건강하고 지속가능성이 있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 빈곤 아동의 수는 전체 아동수의 5%에 달하는 54만여 명으로 추계되었다. 그에 비해 이주 아동 수는 3만여 명으로 그 수가 훨씬 작다. 결식은 성장기에 있는 아동에게 신체적 성장 저하, 정서적 불안감, 심리적 위축, 학교 부적응, 학습능력 저하 등의 여러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정상적인 사회구성원으로 자라지 못하고 많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현재 결식아동 19만여 명으로 추계된다. 또한 현행 규정상 어린이집은 정원의 20%만을 장애아동을 채용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오갈 곳이 없는 장애아동들이 늘고 있다.

반면,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의거하여 이주아동의 권리 또한 자국 아동들의 권리와 동등하게 보호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각을 이루고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 의하면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한국에서 살게 된 미등록 이주아동들은 "불법자로 분류될 수 없으며 부모의 신분과 상관없이 아동의 체류권, 보호권 등을 보장받아야 하는 신분"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주아동들의 인권은 무시되고 있다. 사회적으로 기본적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이주아동들은 다른 사회 구성원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다양한 문제를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전체 사회의 안정, 치안, 발전을 위해서 이주아동의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한국 노동 시장은 외국인 노동자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리고 현재 미등록 이주 노동자가 17만여 명으로 추산되며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미등록 이주아동의 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이주아동 문제가 더욱 큰 사회적 이슈로 번지는 것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이다.

# 안락사

## 제 1 실무그룹 보고서

작성 : 의장단 김성은, 김진서, 박뿌리

### 1. 안락사의 배경

#### (1) 안락사 논의의 필요성

국내의 경우, 안락사 관련 사건은 1997년에 있었던 보라매병원 사건이 대표적이다. 1997년 12월, 뇌를 다쳐 인공호흡기에 의존한 채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환자가 있었는데, 보호자가 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게 되자 퇴원을 요구하였으며, 병원은 이를 받아들여 인공호흡기를 제거하였고 환자는 5분 만에 사망하였다. 이에 2004년 6월 대법원은 보호자의 요구로 환자를 퇴원시켜 사망케 한 담당 의사 2명에게 살인 방조죄를 적용, 유죄판결을 내려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였다. 중증 환자의 경우 환자나 보호자가 원하면 퇴원을 허락하는 것이 관행이었기 때문에 의료계에서는 현실을 무시한 판결이라고 반발했다. 하지만 종교계 등 여러 단체들은 이와 같은 판결에 지지를 보냈다.

현대 사회에서 의학이 점점 발달하면서 이전에 비해 더 많은 생명을 구하고 있다. 의학의 발전에 따라 환자들의 고통 또한 크게 줄어든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들의 인식은 의학의 발전 보다는 더디게 자라고 있다. 죽어가는 환자의 생명을 기계를 통해서라도 유지해야 하는가, 연명장치를 제거해야 하는가, 고통 받는 환자의 죽음을 앞당길 수 있는가 등 안락사를 비롯한 수많은 생명윤리의 영역에서 우리는 딜레마를 겪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는 변화된 우리 사회의 실정과 인식을 반영하여 환자에 대한 인권의 차원에서 안락사를 바라보아야 한다. 우리는 이와 같은 관점으로 이 보고서를 통해 안락사에 대한 배경 및 추세, 개념 및 정의, 쟁점 등을 논의 해 보고자 한다.

#### (2) 안락사의 현대 추세

1970년대에 들어 인권 의식이 더욱 성장하면서 안락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바뀌어갔다.

미국에서는 1975년의 카렌 퀸란 사건이 세계적인 안락사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인공호흡기를 단 채 무의식 상태에서 죽어가는 딸의 모습에 충격 받은 부모가 치료 중단을 요구하자 법원은 인간답게 죽을 권리가 있다며 인공호흡기 제거를 허락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를 계기로 오하이오 몬태나 하와이 워싱턴 등의 주에서 안락사 법안이 주민 투표에 부쳐지는 등 안락사 운동이 활발해졌다.

안락사에 대해서는 세계 각국이 아직까지 조심스런 입장이나 소극적 안락사인 존엄사는 보다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존엄사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국가로는 네덜란드, 벨기에, 스위스 등이 있다. 미국에서는 유일하게 오리건 주가 '존엄사 법'을 시행하고 있다. 이밖에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에서도 존엄사 허용 문제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추세다.

### 2. 안락사의 정의

#### (1) 안락사의 정의

안락사라는 용어를 분명히 정의하기는 힘들다, 통상적으로 적극적 안락사와 소극적 안락사로 나뉘는데, 적극적 안락사는 사기에 임

박하여 극심한 육체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환자를 어떤 적극적인 행위(예를 들면 치사량 이상의 모르핀, 포타슘 등을 주사하는 것)를 통해 사망에 이르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달리 소극적 안락사는 보통 회복가능성이 없는 식물인간 상태의 환자에게 단순한 연명 조치에 불과한 의료 행위(인공호흡 장치 등)를 중지하여 인간으로서 존엄을 유지하면서 자연적인 죽음을 맞도록 하는 것을 말하며 이를 존엄사 혹은 자연사라고도 부른다.

소극적 안락사 (수동적 안락사)	환자의 소생가능성과는 무관하게 환자나 환자가족의 요청에 따라 환자에게 필요한 의학적 조치를 하지 않거나 인위적인 생명연장장치를 제거하는 것
적극적 안락사 (능동적 안락사)	환자에게 독그물 투여 등의 방법으로 생명을 빼앗는 능동적 행위

### 3. 안락사의 쟁점

#### (1) 윤리적 측면

윤리적 측면에서는 “인간의 존엄성에 의한 존엄하게 죽을 권리”와 “의사의 생명을 지켜야 하는 의무와 인간의 생명경시풍조의 조장” 간의 대립이 첨예하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고 이는 환자가 원한다면 존엄하게 죽을 수 있음을 알려준다. 만일 환자가 임종을 앞둔 무의미한 생명연장치료를 받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소용없는 치료를 중단하는 존엄사 및 안락사를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의사가 될 때 하는 선서인 ‘히포크라테스 선서’에 의하여 의사는 “나의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노라”라고 선서하게 되어있고, 이에 따라 의사는 환자의 생명을 가장 귀중한 것으로 여기고 환자를 살리는 데에 힘써야 한다. 또한, 통상적으로 안락사의 제도와 연관된 환자들은 완치가 가능하거나 충분히 견디어낼 수 있는 질병들과는 거리가 먼 불치병이거나 견디어낼 수 없을 정도의 고통을 동반한 질병에 걸린 경우인데, 현실적으로 이는 치료 과정에서 경제적 부분과 크게 관련되어있다. 즉 환자의 경우, 가족에게 경제적 부담을 지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의 안락사라는 제도는 자칫 인간의 존엄성을 상실하고 생명을 경시하는 현상 즉, 물질에 의한 생명 경시풍조의 현상으로 까지 이어질 수 있다.

#### (2) 제도적 측면

제도적 측면에서는 “제도적 장치의 미숙과 안락사 제도의 앞으로의 방향”인데, 이 경우 2009년 소극적 안락사, 즉 존엄사를 인정하는 대법원의 판결로 존엄사에 대한 찬반 논쟁이 극심했던 대한민국의 예를 들 수 있다. 대한민국의 경우, 환자와 가족들의 사회적 부담을 경감시켜주었을 만큼의 사회보장, 제도 등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채, 의료계에서 사전의료지시서의 도입을 추진하였는데 이는 환자와 가족의 입장을 고려한 결론이라고 보기엔 무리가 따른다. 또한 대법원에서 연명치료 중단의 판결을 받았던 김 할머니(77)는 당초호흡기를 떼면 짧게는 10분, 길어도 3시간 안에 임종할 것으로 예측했던 병원의 판단과 달리, 201일이라는 시간이 걸렸고 그 기간 동안 폐렴이나 욕창 증세도 없었으며 다른 건강 수치도 큰 변동 없이 안정적이었다. 즉, 사회 보장과 제도가 확실히 준비되지 않은 상태 그리고 환자 개개인의 특성과 질병별 확실한 판단이 명시된 제도가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 역시 심각한 문제로써 작용할 것이고 앞으로 어떤 방향, 어떤 제도를 통해 이를 극복해 나갈지를 논의해야 할 것이다.

#### (3) 의식적 측면

의식적 측면에서는 “올바른 인식의 부족과 이와 관련된 정책과 방향”인데, 미국의 경우 중소 도시나 대도시의 공공 도서관에 가면 ‘말기 질환의 여행’이나 ‘아동의 상실감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같은 죽음과 관련된 책과 논문들이 수도 헤아릴 수 없는 정도로

비치되어 있고 청소년 시절부터 삶과 죽음을 둘러싼 사생 관 이야기를 꺼내고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바람직한 일인가에 대해 가치관을 갖도록 도와주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미국에서 1970년대 중반에 카렌 퀸란 사건을 계기로 자연사법(존엄사법)이 세계 최초로 만들어지고 1989년에 미국의 모든 주에서 생전유언을 인정하는 표준말기환자권리법이 제정된 것도 이 같은 ‘생과 사’ 교육을 통한 사회의식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다. 종교적 기반과 문화적 배경 탓으로 미국처럼 존엄사 관련법이 마련되지 않은 일본의 경우에도 존엄사와 안락사, 호스피스에 관한 책과 논문의 수는 미국의 절반 수준에 이르고 있다. 또한 미국과 마찬가지로 말기환자와 식물인간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각급 교육기관과 시민단체가 주관하는 죽음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대한민국도 죽음과 안락사를 언급하는 서적이 적지는 않으나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에 비해서는 그 양이나 질적으로 부족한 실태이다. 게다가 사회 전반에서 안락사에 대한 교육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 때문에 아직까지도 안락사를 낯설어 하는 분위기가 사회 곳곳에 조성되어 있다. 이는 안락사를 시행하기 위한 인프라가 준비되지 않았음을 알려주며 이에 따른 제도 및 정책의 방향을 논의해야 할 것이다.

#### (4) 대체적 측면

안락사를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여러 단체를 중재해 주고 있는 대책이 바로 호스피스 제도이다. 호스피스 제도는 죽음을 앞둔 환자에게 안락사 대신 편안한 임종을 맞도록 위안과 안락을 최대한 베푸는 봉사활동을 말한다. 4세기경 Fabiola가 개인 저택을 개방하여 환자를 돌보다 예루살렘 성지 탈환을 위한 십자군전쟁 당시 많은 부상자를 호스피스에서 수용하여 수녀들이 치료하였고 부상자들이 이곳에서 임종하게 되면서 호스피스는 임종을 앞둔 사람들의 안식처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현재 호스피스는 임종 환자가 편안하게 죽음을 맞을 수 있도록 하며 환자의 가족까지 돌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환자가 사망한 후 가족구성원들이 느끼는 충격이 더욱 심각할 수 있기 때문에 사망 후 1년까지 지속적으로 보살펴준다. 호스피스는, 죽음이란 삶의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는 것을 인식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정신적 및 육체적 고통이 완화되도록 도와주는 것이므로, 암 환자의 치료에도 의학적 견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는 견해도 있다. 즉 호스피스제도는 안락사라는 제도와 별개가 아닌 하나의 대체적인 측면으로서 혹은 상호적인 측면으로서 논의 되어야 할 것이다.

# 안락사

## 제 2 실무그룹 보고서

작성 : 의장단 박다원, 박채영, 유서영

안락사란 죽음의 당사자가 죽음의 과정에 들어섰을 때 안락사를 수행하는 사람이 그 진행을 지연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함으로써 안락사 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안락사의 허용 여부에 대해 의학적, 종교적,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윤리적, 사회적, 기타 여러 면에서 끊임없이 논란이 일어나고 있고, 안락사는 이제 한 개인과 가족의 문제가 아닌 커다란 사회적인 이슈가 되어 신문이나 뉴스, 대중매체 등에서 최신의 안락사에 관한 자료들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정 케이스들에 관한 안락사 자료들을 보고 안락사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겼습니다.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는 정할 수 없으나, 우리는 이토록 논쟁거리가 되는 안락사를 '인권'이라는 입장에서 한 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첫째, 안락사는 인권을 존중하는 것일까, 살인을 방조하는 것일까?

찬성측 입장은 자신의 삶을 선택할 권리 즉, 결정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 결정권에 의해서 죽음을 선택하고 법적으로 보장받기를 원합니다. 안락사를 선택한 것은 개인의 기본적 자유이고 자율적인 결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간의 생명이 신성불가침하다는 원칙을 내세워 품위 있는 죽음을 선택할 권리를 빼앗는다면 이것은 엄연한 인권침해라 할 수 있는 것이 안락사를 찬성하는 찬성론자들의 입장입니다. 반면, 인간은 본질적으로 존엄한 존재인데 타의적으로 생명을 중시시킨다면, 이것은 인간의 존엄성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보며, 안락사의 허용은 사회적으로 생명의 가치를 폄하시킬 우려가 있고, 극단적인 경우 '살인의 합법장치'가 될 수 있으므로 안락사에 대해 반대한다는 의견입니다. 고의로 환자를 죽이는 행위라고 할 수 있는 안락사를 시행하는 의사를 처벌하지 않는 것은 '시민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정부가 생명에 대한 폭력을 조장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회에서는 시민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킬 수 없습니다. 또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주변 가족들의 요청으로 안락사를 택하거나, 경제력이 부족하여 안락사를 택하는 경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엄연한 인권침해이며 일어나서는 안 될 일입니다. 또한 안락사는 생명경시풍조를 조장할 우려가 있습니다. 즉, 환자의 자기 결정권에 의해서 죽음을 선택하고 법적으로 보장받는 것은 생명 존중을 포기하는 사회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 둘째, 의사의 생명유지 의무와 생명연장 기술의 발달

히포크라테스의 선서에는, '나의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노라.'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즉 의사의 생명 유지 의무를 뜻하는 것입니다. 결국 삶은 누구에게나 그 자체로 가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자면, 인공호흡기에 의해 생명을 연장하는 사람도 그러한 자신의 삶을 충분히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길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락사 허용은 고통을 덜어주고 삶의 질을 유지시킬 수 있는 완화 치료를 소홀히 하게 만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료진은 안락사를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하게 되어 의학연구에 전념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찬성론자들의 주장은 대한의사협회가 2001년 4월에 마련한 '의사 윤리 지침안'에 따르면 안락사 및 의사 조력 자살을 금지하고 있으나 "의사가 희생 불가능한 환자에게 의학적으로 무익하고 무용한 치료를 보류하거나 철회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규정해 놓고 있으며, 환자 스스로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영위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불치병을 앓는 환자가 겪는 극심한 고통을 외면하는 것은 오히려 부도덕하기 때문에 안락사는 윤리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는 주장입니다. 물론 안락사가 정책적으로 결정이 된다면 남용될 소지가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안락사 허용에는 엄격한 조건(안락사 법안 안전장치)들이 따르므로 남용될 소지를 충분히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셋째, 안락사를 합법화해야 하는가

안락사의 실태를 살펴보면, 네덜란드는 2000년 11월에 세계 최초로 안락사를 합법화하였습니다. 또한, 프랑스는 2004년 환자 본인의 의지로 치료 중단을 요청할 수 있는 <인생의 마지막에 대한 법>을 하원에서 통과시켰고, 영국은 환자가 소송을 통해 안락사 허용여부에 대한 법적인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일본은 1995년 요코하마 법원의 판례에 따라 여러 기준을 정해 유통성 있게 안락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작년 6월 23일, 우리나라에서도 첫 '존엄사'가 시행되었습니다. 그런데 호흡기 제거 후에도 환자는 정상적인 호흡을 보이며 생존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존엄사 허용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미국의 영양 공급 튜브를 제거한지 13일 만에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그녀의 남편과 부모의 갈등을 넘어 미국 내 보수 단체와 부시 대통령, 플로리다 주 의회, 연방 의회가 개입하고 교황청까지 '안락사야말로 인권침해'라며 가세하여 세계적인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안락사가 조금씩 허용되면서 긍정적 입장과 부정적 입장이 팽팽한 대립을 이루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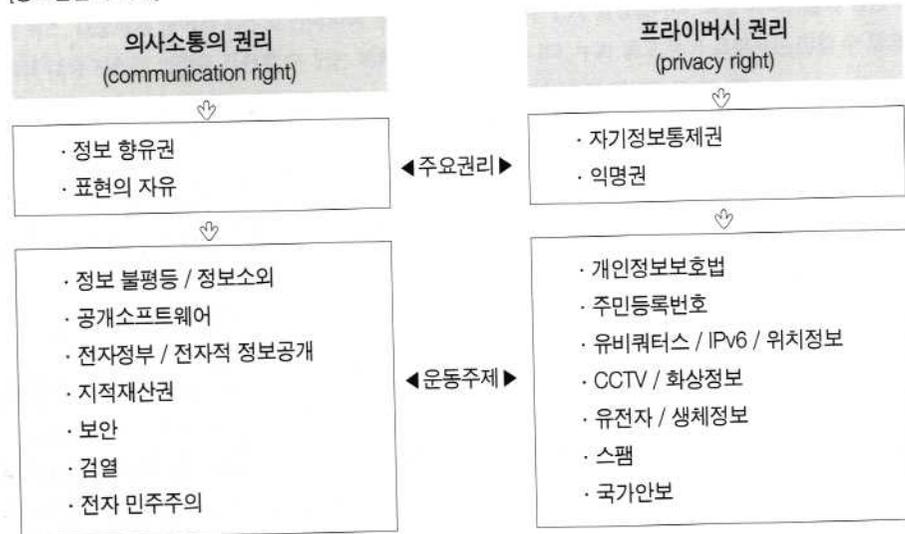
# 정보프라이버시

## 제 1 실무그룹 보고서

작성 : 의장단 박정연, 전세정, 정상욱

### 1. 정보프라이버시

[정보인권의 개념]



2003년부터는 더욱 정보인권이라는 표현이 확산되었고 시민단체들이 17대 국회에 발송한 정책제안 중 하나는 '2005년 정기국회 정보인권 정책 자료집'이라는 제하로 발송된 바가 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표현의 자유 관련: 인터넷 실명제 의무화 정책 폐기
- 개인정보보호 관련: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 CCTV확산에 대한 규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주민등록법 개정, 주민등록번호 민간이용 규제, 호적법 개정과 목적별 신분등록제 제정,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안」 문 제, 노동자감시 문제, 검경의 범죄자 DNA 데이터베이스(DB) 구축문제
- 지적재산권 관련: 문화예술 창작물에 대한 이용자의 접근권 보장하고 창작환경 확대

결국, 정보인권이라는 개념은 인터넷 환경에서 더욱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기본권으로 정의할 수 있다. 그리고 앞에서 살펴본 바 대로 정보인권의 권리 영역은 프라이버시권, 정보접근권, 표현의 자유, 저작권(정보공유 관점에서) 4개로 범주화

- 프라이버시권: 자기정보결정(통제)권, 익명권, 감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권리, 사생활 보호

- 정보접근권: 지역, 성, 장애등의 차별 없이 정보를 향유할 수 있는 기본적 권리, 평등권적 의미에서의 정보통신 서비스의 접근 권, 알권리로서의 국가·공공기관의 정보에 대한 접근권, 정보소통의 권리
- 표현의 자유: 누구나 의견 및 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 간섭을 받지 않고 의견을 지닐 자유와, 무슨 수단을 통해서거나 그리고 국경과는 무관하게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얻고 또 전달할 수 있는 자유.(세계인권선언 19조),
- 저작권: 자신이 창조한 과학적, 문학적, 예술적 창작물에서 생기는 정신적(저작인격권), 물질적 이익으로 보호 받을 권리(세계인 권선언 27조 2), 공정이용의 권리, 정보공유권리
- 이용자권리: 정보소통이 상업망을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공동체 성격의 연대에 관한 권리

### 정보인권 척도 개발을 위한 권리 영역 유형

#### A. 프라이버시권 유형

- 사생활 : 세상의 관심으로부터 홀로 있을 권리, 가정(물리공간인 집안)에서 평온을 유지할 권리, 사적 공간에서 파파라치(황색 저널리즘)에 의한 촬영, 침입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 통신 프라이버시 : 유선 전화기, FAX, 이동 전화(통화내용 및 단문 서비스) 전자 우편, 메신저(MSN,네이트온) 등, 물리적인 공간에 직접적인 침범이 없어도 통화내용 도청 등을 통한 이동하는 정보를 엿듣는 것까지 프라이버시 침해행위로 넓게 해석함(공중전화, 유선 전화 도청 등)
- 정보 프라이버시 :
  - (1) 개인과 개인: 개인크래킹<sup>6)</sup>, 인격파괴, 사생활 공표(디지털 카메라 등으로 찍은 사진을 공표함), 몰래카메라, 허위 사실 공표, CCTV에 의한 자신의 사적 영역(집안, 상점 앞, 방 등)에 대한 감시 가능 등
  - (2) 개인과 기업: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및 수집목적 외 사용, 제공자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및 스팸메일 전송, 소비자의 상거래활동의 역추적, 수집된 개인정보의 2차적 활용, 몰래카메라, 인터넷 이용정보, 인터넷 회원 가입 시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 인터넷 이용연령의 저연령화에 따른 어린이를 이용한 부모 동의 없는 개인정보수집, CCTV를 활용한 공장 등 생산현장, 상가 등 상업지구에 대한 작업 감시 등에 이용, 생체인증기술을 이용한 회사 출입 허용 등을 위해 지문 등의 개인정보 활용, 성명 및 개인식별 정보의 영리적 이용(주민등록정보, 신용카드정보) 및 유출, 주민등록번호 유출 및 식별 매개체화.
  - (3) 개인과 국가: 성명 및 개인식별 정보의 국가 통제를 위한 목적으로 이용(주민등록정보, 신용카드정보), 의료정보, 교통정보 등, CCTV를 범죄예방 등을 위하여 지하철, 거리에 설치, 국가 시설물 등의 안전을 위한 설치, 전자주민카드, 전자의료카드 등에 RFID를 장착할 수 있음, 국가안보, 치안유지, 범죄 예방 등의 목적으로 도청 및 감청, 통합정보시스템을 인터넷에 구축 하여 개인정보를 통합 관리 문제, 주민등록번호 식별 매개체화.

#### B. 저작권의 유형

- 저작인격권: 저자 혹은 출처의 명시, 자신의 창작물을 공표할 수 있는 권리, 타인의 저작물에 대한 배려,
  - 지적재산권: 자신의 창작물을 이용한 물질적 이익을 행사 할 수 있는 권리, 복제, 전송권, 지적재산권은 소유권이 아닌 제한적 권리(한국은 50년(베른조약), 미국은 70년),
- 6) 크래킹은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기업 전산망, 개인 컴퓨터 등에 침입하여 주요 정보를 경제적인 목적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취득하는 행위로 단순 호기심 등의 이유로 저지르는 해킹과는 구별된다.

- 공정이용의 권리: 사적 복제의 허용, P2P의 사적 복제 허용, 공공성을 위한 지적재산권의 제한,
- 정보공유의 권리: 지식은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준다고 해서 나에게서 사라지거나 없어지지 않음. 지식의 공유. 지적재산권은 시간이 지나면 공공자산화 됨.

## 2. 논제소개

### (1) 인터넷 실명제

#### ① 개념

인터넷 이용자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어야만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릴 수 있는 제도.

#### ② 논제선택이유

인터넷에서의 실명의 사용은 인터넷의 주요한 특성이었던 익명성의 포기를 의미한다. 이 익명성이라는 요소가 수용자와 제공자간의 여러 사회적 격차 등 자유성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방해물들을 완화시켜 인터넷의 급격한 발전을 이룩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현 인터넷상의 언어, 격식, 이성의 파괴는 이 장점을 포기해야 한 다는 원성이 나올 정도로 심각한 것이 되고 있다. (ex:악성 댓글을 포함한 온갖 비방과 욕설, 온라인 사기) 인터넷이 가정이나 학교에 필적할 정도로 청소년들의 사회화에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매체가 된 현대에 이와 같이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 인 해결책으로 실명제가 대두된 것이다. 이 사안의 핵심적 논쟁 구도는 실명제의 시행으로 약화될 인터넷상에서의 자유도와 그로 인해 필연적으로 수반될 사회적 반항에 대한 비관적 전망과 그 피해들을 감수하고서라도 인터넷의 오염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에 대한 강경한 입장의 대립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주제는 현재 국내의 정보 인권 관련 사안 중 가장 큰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 사안 이라 풍부한 자료를 얻을 수 있고, 그 때문에 가장 치열한 논쟁거리가 될 것이라 예측된다.

#### ③ 논쟁사례예시

찬성근거 : 표현의 자유에 관한 법령 사생활 보호에 대한 법령  
반대근거 : 묻지마 범죄, 악플, 인권 존중에 대한 법령

#### ④ 관련 하위 소주제토론

- ㄱ. 사이버테러
- ㄴ. 사이버모욕죄

### (2)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과제

#### ① 개념

개인 프라이버시- 개인의 사적인 생활, 혹은 그에 관한 정보.

#### ② 논제선택이유

정보화 사회에서 개인정보로 대표되는 사생활의 침해는 이미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 논쟁에서는 개인정보 취급에 관 한 개인과 기업, 혹은 개인과 국가 간의 대립 구도를 형성하게 된다. 이 사안은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에 대한 재고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사회 변혁적인 색채를 띤다. 개인과 집단의 대립 구도는 거의 필연적으로 개인의 출혈을 강요하게 되므로 이러한 쟁점에서 는 찬반의 대립구도가 희박해지고 개인의 권리와 사회적 제약 사이에서의 절충안을 합의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 ③ 논쟁사례예시

사회다방면에서의 개인정보 유출사태,  
사생활 보호에 대한 법령-개인정보 취급에 대한 법령  
각 인터넷 포털사이트나 카드제휴, 멤버십 등 가입절차상 이용약관의 강제성

#### ④ 하위소주제토론

- ㄱ. NEIS와 교육계 갈등, (학생개인의 정보존중 혹은 학부모의 알권리)
- ㄴ. 정보화시대의 인권, CCTV 설치논란

### (3) 지적재산권 보호 혹은 개방

#### ① 개념

지적재산권, 지적소유권이라고도 한다. 지적소유권에 관한 문제를 담당하는 국제연합의 전문기구인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는 이를 구체적으로 '문학 · 예술 및 과학 작품, 연출, 예술가의 공연 · 음반 및 방송, 발명, 과학적 발견, 공업의장 · 등록상표 · 상호 등 에 대한 보호 권리와 공업 · 과학 · 문학 또는 예술분야의 지적 활동에서 발생하는 기타 모든 권리를 포함 한다' 고 정의.

#### ② 논제선택이유

인터넷이 발전함과 동시에 방대한 양의 정보들이 매일같이 생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무분별한 정보의 범람 속에서 자료 생산자의 권리(소유권을 비롯한)가 쉽게 침해받고 있다. 이 문제에서는 찬반논쟁보다는 생산자의 권리 보호에 대한 협의안의 도출이 관건이 될 것이다.

#### ③ 논쟁사례 및 하위소주제토론

- ㄱ. 온라인 음악시장 유료화
- ㄴ. 불법 다운로드
- ㄷ. 저작권법령

※각 논제소개 부분에서, 논제의 구체적 개념에 관한 부분은 이미 목차 2의 정보프라이버시 개념차레에서 제시했기 때문에 따로 다시 언급하지 않 았습니다. 참고해주세요.

## 3. 논제관련자료

### (1) 인터넷 실명제 관련 뉴스 및 관련사이트

쿠키뉴스 [정통부 '도입' 검토에 업계 논란] 인터넷실명제 약인가 독인가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918913522&code=11161200>

인터넷 실명제 도입 '공방' 가열 -네이버뉴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057&aid=0000027405>

인터넷실명제 힘받는다! - 네이버뉴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052&aid=0000106098>

인터넷실명제 반대 커뮤니티  
<http://www.freeinternet.or.kr/>

(2) 언론매체의 VOD 자료

MBC 100분 토론

다시보기: <http://www.imbc.com/broad/tv/culture/toron/vod/>

관련논제	회차	방송날짜	제목
인터넷실명제	391회	2008.10.9	사이버 모욕죄, 필요한가?
	317회	2007.1.25	인터넷 악성댓글, 대책은 있나
지적재산권	182회	2003.12.1	온라인 음악시장 유료화, 그 쟁점은
개인정보	162회	2003.7.10	정보화시대의 인권, CCTV설치논란
	157회	2003.6.5	끝장토론II - NEIS와 교육계 갈등, 해법은 없나

PD 수첩

관련논제	회차	방송날짜	제목
사이버테러	822회	2009.7.14	생생이슈 : DDOS 사이버대란
지적재산권	818회	2009.6.16	심층취재 : 저작권의 뒷에 걸린 아이들

지식채널e "두명의 해커" (2007.4.24)

세상 사람들의 컴퓨터에 내가 만든 프로그램이 깔려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한때는 같은 꿈을 꾸었던 두사람, '리처드 스톨만' 과 '빌 게이츠' 이야기.

[http://home.ebs.co.kr/reViewLink.jsp?command=vod&client\\_id=jsike&menu\\_seq=1&enc\\_seq=1177922&out\\_cp=ebs](http://home.ebs.co.kr/reViewLink.jsp?command=vod&client_id=jsike&menu_seq=1&enc_seq=1177922&out_cp=ebs)

(3) 정보인권 관련사이트

함께하는 시민행동 정보인권

<http://action.or.kr/home/inforight/>

경찰청 사이버테러 대응센터

<http://ctrc.go.kr/index.jsp>

정보인권에 접속하다[국가인권위원회 2007년 인권단체 협력사업]

<http://toon.jinbo.net/>

정부 "정보인권보호" 외면 -네이버뉴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2&aid=0000060597>

# 정보프라이버시

## 제 2 실무그룹 보고서

작성 : 의장단 김미나, 김민주, 김현진

인터넷, 기사, 책, 블로그 등 검색창 한번 두드리면 수많은 정보들이 우리를 유혹한다. 정보화 시대, 우리는 넘쳐나는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다. 특히 21세기 PC가 보편화 되면서 인터넷은 정보를 얻기 위한 가장 보편적인 수단이 되었다. 사람들은 인터넷으로 업무를 보고, 다른 사람과 커뮤니티를 이루고 그 속에서 자신을 표현하고 정보를 교류한다. 이제 인터넷은 삶 속 깊숙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요한 존재가 되었다. 이와 같은 정보화 시대에 새롭게 대두되는 문제는 바로 정보인권이다. 하지만 정보사회에서 공공 혹은 민간 영역에서 인권이 경제적 가치에 비해 부차적인 문제로 취급되고 있다. 이 뿐만이 아니라 제도 면에서 여러 가지 입장이 상충되면서 개정 및 시행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

먼저 인권이란 인권은 인간의 권리이면서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할 권리이다. 누려야 할 권리라는 점에서 인권은 타인과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내가 인권을 누릴 때, 나와 동일한 인간인 다른 사람의 인권도 고려하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인간의 삶이 타인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에서 인권적인 상황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난다. 인간의 권리가 되기 위해서는 본질적으로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성질을 가져야 한다. 이 때문에 인권은 아무런 조건 없이 오직 인간이라는 이유로 모든 인간에게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정보인권이란 정보사회로 지칭되는 변화된 인터넷 환경에서 더욱 중요시 되는 인권 문제를 부각한 것이다. 정보인권은 법으로써 실행 여부에 상관없이 보편적이어야 하며, 정보인권을 둘러싼 권리는 크게 정보접근권, 저작권(정보공유 관점에서),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권 4개로 범주화 된다.

정보접근권이란 평등권적 의미에서의 정보통신 서비스의 접근권을 말한다. 따라서 누구나 정보를 누릴 권리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지적재산에 대한 정보 접근권은 저작권의 문제에서 상충한다. 저작권이란 자신이 창조한 창작물에 정신적, 물질적 이익으로 보호받을 권리를 가지기 때문이다. 지적 재산권을 정당하게 보호함으로써 창작자의 창작 의욕을 고취시키고 궁극적으로 그 사회의 문화와 지식 발전이라는 공공성을 실현할 수 있어야 하지만, 지적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보호는 정보와 지식의 과도한 상품화와 지식 독점으로 정보접근권을 제약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표현의 자유이다. 표현의 자유란 누구나 의견 및 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 간섭을 받지 않고 의견을 지닐 자유와 전달할 자유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사이버 상에서의 표현의 자유는 악플로 인하여 타인의 기본 권리를 침해하는 사례가 늘어가면서 법에 대하여 표현의 자유는 억압 위기에 놓여있다. 그 예가 바로 사이버 모욕죄이다. 사이버 모욕죄는 인터넷 상에서 사이버 테러로 인하여 타인의 자살이나 기본권 침해 사례 등이 늘어가면서 대두된 문제이다. 사이버 모욕죄의 내용은 제한적 실명제사용, 댓글 삭제 권한 강화, 신고제로 돼 있는 현행 모욕죄를 대폭 강화(본인 고발 없이도 수사할 수 있게 된다.) 여기에 인터넷 주소 사용자 본인 확인제를 도입, 댓글 관리 및 삭제 권한을 대폭 강화 등이 있다. 그러나 사이버 모욕죄는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공권력이 직접 인터넷 공간을 통제함으로써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것이라 우려가 큰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프라이버시권이란 자기정보결정(통제)권, 감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권리, 사생활 보호 등을 말한다. 오늘날 벌어지는 상당수의 인권 문제들은 프라이버시권과 상충하고 있다.

우리는 태어나면 우리만의 13자리 개인고유의 번호인 주민등록번호를 부여 받는다. 주민등록번호는 정보수집 관리 과정에서 식별 번호로서의 기능을 하며, 개인정보를 모으고 축적하는데 효율적인 수단으로 사용된다. 원래 주민등록번호는 국가가 국민들을 효과

적으로 관리하고 행정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고안된 제도다. 그런데 국가가 마련한 이 제도로 인해 국민의 데이터베이스화도 가속화 되면서 주민등록번호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기업과 유출로 인한 피해가 날로 심각해지면서 개인정보유출에 관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지금 까지 주민등록번호로 인해 피해를 받게 되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주민등록번호 소유자 개인의 몫이었다. 주민등록번호는 현대사회에서 행정업무를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고,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정보를 용이하게 검색, 정리, 종합할 수 있지만 반면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개인의 정보를 역으로 추적하여 한 개인과 관련된 정보들을 검색, 축적하여 악용할 소지도 있기 때문에 문제이다.

두 번째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관한 내용이다. 통신비밀보호법이란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제한은 그 대상을 한정하고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쳐도록 함으로써 통신비밀을 보호하고 통신의 자유를 신장하기 위해 제정한 법이다. 통신의 비밀은 헌법 18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이다. 국민의 기본권은 국가에 의해 제한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는데 통신비밀의 경우 범죄 수사를 위한 국가의 합법적인 감청이 인정되고 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국가의 안보와 개인정보보호라는 문제에 대해 서로 상충하고 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현행법의 미비점 때문에 통신보호법 개정을 주장하고 있다. 산업스파이나 국제 테러 등을 막기 위한 합법적 감청이 사실상 불가능해 엄청난 국가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행법을 개정해 휴대전화 감청이 가능한 대상을 명확히 하면 국가적 이익은 물론 오히려 인권 침해 논란도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시민단체를 포함한 야권은 무분별한 감청을 우려해 법 개정에 부정적이다. 개정보다는 감청 대상자에 대한 통보 의무 강화나 감청과 수사 기관을 별개로 두는 등의 제도적 보완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보완책 없이 법만 개정하면 결국 인권 침해 논란만 가중시킬 것이란 주장이다.

세 번째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ational Education Information System, 이하 NEIS)문제이다. NEIS란 학교단위에 구축되어 있던 정보시스템을 개편하여 교육인적자원부, 교육청, 등 모든 교육행정기관과 초·중등학교를 인터넷으로 연결하여 교육행정 업무를 전자적으로 연계·처리할 수 있도록 구축한 시스템을 의미한다. 편익과 인권과 사생활 문제가 상충하면서 문제가 되었다. 먼저 교육부 등 교육행정기관은 NEIS가 각종 학사민원 서비스와 통계처리를 편리하게 해주고 학부모들이 자녀의 학교생활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는 훌륭한 교육정보화 도구이며, 학생의 주요문제가 무엇인지 이해하는데 크게 기여하여 학생지도의 질적 수준을 높일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전교조로 대표되는 반대 입장에서는 NEIS가 학생 및 학부모의 인권과 사생활을 침해하고 교사를 통제하는 '반인권적 국가통제 시스템'이라고 반박하였다. 학생의 민감한 각종 개인 정보를 개별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국가가 수집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며, 지나치게 자세히 학생 및 학부모의 신상정보가 기록되고 학생의 사전 동의 없이 정보가 수집되고 적된다고 주장하였다.

# 청소년의 집회 및 결사의 자유

## 제 1 실무그룹 보고서

작성 : 의장단 박다원, 박채영, 유서영

### 1. 문제 제기 및 배경

'자유는 억압의 대상이 아니라 장려해야 할 권리이다'

2008년 5월, 대한민국은 다시 한 번 촛불의 열기에서 말미암은 함성이 온 나라를 뒤덮었다. 많은 국민들이 광화문으로, 시청 광장으로 쏟아져 나갔고, 또 그 시민들의 앞에는 소화기와 진압봉, 방패를 든 전투경찰들의 인간장벽이 촛불 한 자루를 든 시민들을 막고 있었다. 그들은 물러나지 않았다. 그러나 시민들도 물러나지 않았다. 곳곳에서 들리는 함성소리와 비명소리로 이미 그곳은 광장, 열린마당으로서의 의미를 잃어버린 채 점차 아비규환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구경모, 2009)

이 사례의 발단이 된 2008년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을 위한 촛불집회를 시작으로, 여러 가지 이슈와 문제에서부터 이어진 학내 및 대외적인 집회 또는 시위에서 청소년이 새로운 주체로 떠오름과 동시에 다양한 문제를 또한 같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이러한 집회 및 시위를 참가하는 청소년들의 자기결정권 침해 또는 집회시위에 참가하는 청소년의 물리적, 정신적인 보호 또한 시급한 문제 중 하나로 부각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과연 청소년의 집회 및 결사의 자유의 현주소는 어디이며, 또한 과거의 잘못은 무엇인지, 또한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지에 관한 발전적인 해법이 무엇인지를 이번 청소년 모의인권이사회 2010을 계기로 청소년들의 시각에서의 토의를 통하여 새로운 행동의 축으로 자리잡고 있는 청소년의 집회 및 결사의 자유권에 대한 논의를 통해 근대적이고 자주적인 방향으로 청소년 인권을 시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 2. 개념 정의

집회 및 결사의 자유 - 대한민국 헌법 제 21조에 따르면, 그 중 ①항,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라는 조항이 있다. 집회 및 결사의 자유는 이러한 조항에 의해서 보장되는 국민으로써,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이다. 청소년도 완전한 인격체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인간으로써의 기본권 보장 대상에 포함되는것은 극명한 사실이다. 또한, 유엔아동청소년권리협약 제 15조에서도 '(결사 및 평화적 집회의 자유) : 우리는 다른 사람과 만나서 사귀고 모임을 만들 권리가 있다. 물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평화를 깨뜨리는 행동이어서는 안된다.' 라는 조항을 통해 국제적으로 아동 및 청소년의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보호하고 있다.

일반적인 집회 결사의 자유권 중에서도 특별히 청소년, 그 중에서도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 학생의 자치활동이란, 학생들 스스로의 자발성과 자율성에 기초하여 학급이나 학교를 운영하는 일에 참가하고 이를 통해 민주시민으로써의 자질을 갖추고, 창조적인 문화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자신을 개발하는 활동이라는 정의가 있다. (배경내, 1998) 이러한 자치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초·중등교육법 17조에 '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 보호되어야 한다' 와 함께 부칙 시행령 30조에 '학교의 장은 (중략) 학생의 자치활동을 권장,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라는 조항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 3. '청소년 집회·결사의 자유'의 쟁점 사항

(1)

청소년 "우리는 집회에 참여할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다!"

(적극적인 청소년의 집회/결사의 자유권 주장)

Vs

"아니다! 청소년은 집회에 참여해봤자 긴장감을 조성하고 혼란을 야기할 뿐이다!"

(청소년 보호주의)

#### ☞ 자유로운 집시권(집회시위권) 주장 :

청소년은 '어린이 및 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국제 조약' 제 13조에 의거, 사회의 여러 현상을 알고 우리 생각을 말할 권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기성 세대의 많은 구성원들은, 청소년만의 독특한 개성을 바탕으로 형성된 문화를 '아류(亞流) 문화'라 격하시켜 말할 뿐 아니라, 청소년들이 아무 것도 알지 못하고 미성숙한 존재라고만 여깁니다. 하지만, '참과 거짓', 그리고 '바른 것과 그른 것'을 명확히 구분하고, 자신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그 방향 정도는 스스로 파악할 수 있는 시기가 청소년기입니다. 그러므로, 청소년은 집회에 충분히 참여할 만한 자격이 있으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는 뜻을 모아 집회를 열 자격도 충분히 있다고 주장합니다.

#### ☞ 청소년 보호주의적 관점 :

청소년은 아직 보호받아야 할 대상입니다. 만약, 청소년이 집회에 직접적으로 참여한다면, 사회에 지나친 긴장감을 조성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것입니다. 또한, 청소년들은 제대로 된 배경지식을 갖추지 못하는데다 사회 현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 역으로, '집회의 세(勢)'를 불리는 데 이용당하거나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집회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자신만의 뚜렷한 소신이 요구됩니다. 하지만, 아직 사회 현상에 대한 가치관을 잡지 못한 청소년들은 자신의 소신에 의해서가 아니라 군중들의 심리에 의해 의사를 결정하는 비자주적인 행동을 행할 확률이 높습니다. 청소년들의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해 주지 말아야 할 이유는 또 있습니다.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집회 당시, 한 여고생이 중간고사 기간에 광화문까지 와서 욕설을 주된 내용으로 한 연설을 한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는 미성년자가 얼마나 미성숙한 사고로 집회에 임하는 지, 그리고 타인과 정부에 대한 배려심라던가, 이러한 민주적 시민으로써의 자질이라던가 관점의 부족을 알 수 있는 사례입니다. 개인이 아니라 집단이지만, 그들의 명예를 도를 넘게 훼손하는 것은 청소년들의 자유를 일부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2)

"집회에 참여하는 것은 미래에 사회의 구성원이 될 청소년에게 꼭 필요한 사회 경험이 되는 것이다"

Vs

"집회에 참여하는 것은 교육적 효과를 창출해 낼 수 없다!"

#### ☞ 긍정적 시각 :

나 자신의 의견 뿐 아니라 대다수 군중의 의견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장이 바로 집회입니다. 따라서 청소년기에 사회경험을 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책상에 앉아서, 하루 종일 '책을 앞에 두고, 펜을 움직이는' 좁은 의미의 공부만을 강요당하는(또

는 해야만 하는) 주입식 교육 시스템 하에 놓여있는 청소년들에게 이와 같은 사회 참여의 기회는 주체적으로 사회 현상에 대해 능동적으로 사고하는 것, 주인 의식, 그리고 의견을 표출하는 습관을 기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 부정적 시각 :

집회(또는 시위)는 평화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분위기가 과열되는 양상 속에서 폭력적으로 변질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감정기복이 성인에 비해 심한 청소년들이 과연 평화적으로 집회를 할 수 있을지는 매우 의문입니다. 대중의 분위기에 휩쓸려 특정 의견의 편이 되어 배타적인 인간, 수동적인 인간이 되기 쉬운 곳이 집회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집회에 대한 경험이 없는 학생들이 무작정 집회에 참여하여 바르지 않은 집회문화를 배우는 것은 오히려 부정적인 교육 효과를 창출하는 것의 대표적 예일 것입니다.

(3)

'문제 해결에 약이 된다'

(적극적 참여에서 비롯된 해법 모색)

Vs

'문제 해결에 독이 된다'

(논점의 대중화(포퓰리즘) 우려)

#### ☞ 적극적 참여 :

청소년이 집회에 참여하여 의사표현을 한다면 청소년의 시각으로 문제를 다시 볼 수 있으며, 정부를 비롯한 기관 등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좀 더 다양한 계층을 염두에 두고 더 깊은 사고를 하게끔 돕는 '조력자' 역할을 하리라 보입니다. 집회에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자 참여하는 청소년들을 여럿 보는 데서, 사회 이슈에 대한 관심을 갖는 청소년들의 수가 많아지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좀 더 장기적으로 내다본다면 전반적인 시민의식의 향상을 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민들의 정치 참여가 보편화되고, 능동적으로 정치 및 경제 문제 등을 해결하는 데 참여하는 청소년들이 가득한 우리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민주적이고 합법적인' 집회에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것을 지지해야 합니다. 사회 문제를 해결할 때는 다양한 의견이 필요하고, 그 중 여럿이 정답이 될 수도 또는 하나만이 정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생각 또한 한 국민의 의견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청소년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문제 해결에 약이 될 것입니다. 이를 근거로, 우리들의 집회 및 결사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리라 봅니다.

#### ☞ 포퓰리즘적 측면 :

청소년이 집회에 참여하는 것은 청소년이 주체적으로 정치에 참여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정치에 참여하는 사람이 늘어남과 동시에 개인이 주장하는 바가 다양해질 것이며, 합의점에 도달하지도 못한 채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말처럼 말이죠. 어떠한 '결과'를 도출해내기까지가 매우 어려워진다는 문제점이 청소년의 집회 참여로 야기될 수 있습니다. 성인들보다 정치적 현안이나 사회 문제 등을 중립적인 입장에서 바라보기 힘들며, 한쪽으로 치우칠 가능성이 큰 청소년들은 논리성과 타당성이 부족하여 자신의 생각을 다른 사람들에게 마구잡이식으로 관철시키려는 태도를 보일 수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집회 참여는 집회를 통해 보다 나은 길로 대한민국을 이끌어나가는 데 방해가 될 뿐입니다. 이처럼, 문제 해결에 독이 되는 청소년들의 집회 참여는 헌법상 기본권 중에 하나이지만, 일정 부분은 제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 청소년의 집회 및 결사의 자유

## 제 2 실무그룹 보고서

작성 : 의장단 박귀란, 장한빛, 주미영

### 1. 개념 정의

- ☞ 집회: 여러 사람이 어떤 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모임, 또는 그런 모임.
- ☞ 결사: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함, 또는 그렇게 조직된 단체.
- ☞ 시위: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 광장, 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威力) 또는 기세(기세)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제압)을 가하는 행위.
- ☞ 청소년: 어른과 어린이의 중간 시기로 흔히 만 13세에서 만 18세 사이의 사람을 칭함.

### 2. 배경

집회·결사, 즉 표현의 자유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민주주의의 기본적 자유권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 즉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 이외의 이유에도 정치적인 이유 등으로 이러한 표현의 자유가 잘 보장되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최근 들어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한 사례가 허다하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촛불 집회이다. 이것은 정부와 검찰에 의해 '불법 집회'로 간주되어 강제해산 당했고, 아이의 유모차를 끌고 나온 엄마, 고복을 입은 학생들까지 대상으로 하는 물대포, 곤봉 등 경찰의 과잉 진압이 문제가 되기도 하였다.

특히 아직 학생 신분인 청소년들에게는 그보다 더한 제제가 가해졌다. 교육부에서는 시위를 주도하는 학생들에게 '특별 지도령'을 내렸고, 시위에 참가하는 학생들에게 안전지도의 명분 하에 귀가를 강요했다. 시위 참가 학생 수가 많아지자 여러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학교 선생님의 허가 없이 시위에 참가하는 것을 교칙으로 금지하기도 하였으며 이를 어긴 경우 벌점을 부여하거나 벌을 주었다. 이에 '인권연대운동' 등 여러 시민단체와 학생들이 반발했으나 이것은 현재까지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 〈관련 법률 조항〉

#####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지며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 대한민국 헌법 제37조

-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 쟁점1 청소년의 '집회 및 결사의 자유' - 사례를 통한 문제점 극복 및 방안 모색

'집회 및 결사의 자유'는 민주화를 이룩하는 과정에서 정권과 시민 사이에서 늘 충돌하는 권리이다. 현 정권 하에서는 특히 더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번 청소년 모의 인권이사회에서는 그 중에서도 청소년의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 〈찬성측 입장〉

청소년은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할 정도로 학교라는 버젓한 공공장소에서 인권을 침해당하고 있다. 침해 받는 인권 중 하나가 '집회 및 결사의 자유'인데, 이는 헌법에 의해 국민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권리이며 특히 사회적 약자에게 더욱 필요한 권리이기도 하다. 이 권리의 침해는 단순히 표현의 자유의 억압을 넘어 학생들의 침해당한 다른 인권을 되찾기 위한 기본적인 투쟁마저 어렵게 만든다. 또한 교외에서 시행되는 집회 및 결사 참가를 교내에서 규제하는 것 역시 명백한 표현의 자유 침해이다.

#### 〈반대측 입장〉

청소년은 아직 어른이 아닌, 보호가 필요한 시기이다. 따라서 스스로 의사결정을 내리고 책임을 지기에는 덜 성숙했다고 할 수 있다. '집회 및 결사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로,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스스로의 행동에 책임 질 수 없는 학생들을 자칫 위험해 질 수 있는 공간에 노출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 또한 청소년 시기에는 아직 가치 판단의 잣대가 명확히 서 있지 않아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어려우므로 집회 또는 결사를 통해 청소년들이 일부 어른들에 의해 선동되어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 〈첨부자료〉

##### 1. 미성년 학생 인권 들먹여 정치하려나 (09. 12. 23) -헤럴드경제 사설

초안은 학생 인권 보장으로 위장했지만 교내 집회의 무제한 허용 저의가 의심스럽다. 의사결정이 완전치 못한 미성년 학생들의 집회 및 결사 자유 보장은 순수성을 떠나 자칫 외부세력, 특히 정치인들에게 악용당할 위험이 크다. 중고생들이 전념해야 할 공부를 뒷전으로 미룬 채 교내에서 정치성 모임을 갖거나 선거에 나선 교육감 후보가 학교를 순회하며 학생 상대로 선동적 유세 활동을 할 경우 막을 도리가 없다.

##### 2. 인권연대운동-청소년의 표현의 자유 보장을 촉구하는 시민사회 및 교육 단체 성명서

우리나라도 가입된 유엔아동권리협약 제 15조에는 "당사국은 아동의 결사의 자유와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고 "이 권리의 행사에 대하여는 법률에 따라 부과되고 국가안보 또는 공공의 안전, 공공질서, 공중보건이나 도덕의 보호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의 보호를 위하여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것 이외의 어떠한 제한도 과하여서는 안 된다."며 그 권리를 밝히고 있다.

지금 청소년들이 보여주고 있는 집단행동은 전 세계적으로 인정된 기본 권리이며, 민주시민으로서 자신의 역량을 높이는 자치활동의 일환이다. 따라서 정부와 교육당국은 이러한 청소년들의 요구에 부응하여 상식적 반성과 후속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며, 청소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대화할 수 있는 광장과 제도적 통로를 만들어야 마땅하다.

## 쟁점2 '청소년 보호 책임' 과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중 무엇이 더 우선시 되어야 하는가?

법률(청소년보호법)에는 '유해 매체물' 등으로 그 책임의 범위를 한정해두었지만, 지금까지 청소년의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부분적 혹은 전적으로 제한해온 것은 청소년에 대한 '보호책임'이라는 명분이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청소년 모의 인권 이사회에서는 '보호 책임' 과 '기본권 보장' 중 무엇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지 논해보고자 한다.

### <청소년 보호책임 지지 입장>

주요 사회 계층인 '성인'은 그들보다 약자인 '아동'이나 '청소년'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 청소년은 사회 안에서 '약자'의 계층에 속하며, '시위'나 '집회' 등에서 신체적 혹은 정신적인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 상대적으로 정신이 미성숙한 청소년이 정치적인 성향이 강한 집회나 시위 등에 참여 및 주도하는 것은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되며, 청소년에 대한 '보호 책임'을 고려할 때, 청소년들의 '표현의 자유'보다 그들의 '생명권' 혹은 '안전하게 살 권리'를 우선되기 때문이다.

### <청소년의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지지 입장>

청소년 또한 일반 성인과 같이 다양한 언론매체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비판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되고, '집회 및 결사의 자유'가 헌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모든 국민의 기본권'임을 고려할 때, 이는 어떠한 개념보다 상위에 존재한다는 것이 명백하며 보장되어야 마땅한 권리이다. 또한, 청소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청소년의 자기 의사에 의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타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생각되며, 이러한 명분을 내세워 청소년들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은 단순히 청소년을 '미성숙한 존재'로만 인식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생각이다.

## 참가청소년 생활

참가청소년 생활수칙

숙소 배정

## 참가 청소년 생활 수칙

'대한민국 청소년 모의 인권이사회 2010'은 청소년이 주체가 되어 모든 프로그램을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에 의한, 청소년의 행사입니다. 참여하고 지원하는 모든 사람의 인권이 존중되면서 진행되는 '인권으로 통하는 행사'가 되도록 서로 노력합니다.

### ■ 공동생활 기본수칙

- 스스로 긍지를 가지고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활동에 임한다.
- 행사기간동안 개인행동은 자제하며,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자신이 맡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공동체 생활에서의 질서를 지킨다.
- 모든 활동은 대회운영 규칙을 준수하고 대회 주최 기관의 의사를 존중한다.
- 활동, 식사, 취침시간 등 모든 활동에 있어서 정해진 시간을 지킨다.
- 복장은 자유롭지만 단정히 하며, 언행에 주의하여 스스로의 품위를 지킨다.
- 항상 안전사고 예방에 힘쓰고 사고 발생 시 즉시 대회 사무국에 연락하여 적절한 조치를 받는다.
-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되 다른 사람의 의견과 개성을 존중한다.
- 타인의 인권과 대회 운영 정신을 훼손하지 않도록 노력하며, 이를 심하게 훼손하는 사람은 귀가 조치될 수 있다.

### ■ 모의 인권이사회 각종 회의 및 부대 행사시

- 각 프로그램이 시작되기 10분 전에 입실하여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준비하면서, 각 프로그램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한다.
- 발언시간 등 회의 운영 규칙을 준수하며 의장단 및 프로그램 진행자의 안내에 따르고 개별 행동을 자제한다.
- 각 회의에서 너무 논쟁과 경쟁에 치우치지 말고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상대를 존중하는 자기주장을 펼칠 수 있도록 한다.
- 각 회의에서 회의 주제를 정확히 이해하고 논리적으로 발언하면서 다른 사람과 자신의 의견과 비교·검토하여 합의·조정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운다.
- 각 회의 및 부대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인권감수성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한다.
- 안전사고 예방에 유의하고 위험한 행동이나 경솔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

### ■ 취침 등

- 밤 12시 취침하고 아침 7시 기상을 원칙으로 한다. 단, 사무국의 동의를 얻어 지정된 장소에서 다음날 회의 준비를 할 수 있지만, 2시를 넘기지 않도록 한다.
- 실내에서는 정숙하고 취침 및 기상 시간을 지키며 취침 시에는 소등을 한다.
- 숙소에 외부인 출입을 금하고, 숙소에 입소한 후에는 무단외출을 하거나 방을 바꾸지 않도록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회 사무국의 허락을 받는다.
- 남녀 혼숙, 고성방가나 지나친 장난, 청소년의 건강을 해치는 행위(흡연, 음주 등), 불건전한 게임, 타인의 취침을 방해하는 행위는 삼간다.
- 개인 소지품과 침구는 항상 정돈하도록 하며 실내의 모든 물건은 조심스럽게 다루고, 사용한 후 본래 위치에 잘 정리 정돈한다.
- 화재 예방 비상구 및 대피구를 미리 알아두고 소화기 위치와 사용법을 알아 둔다.
- 세면 및 기타 시설은 공동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 후 깨끗하게 닦아서 다음 사람이 불편하지 않도록 한다.
- 고려대학교 행사장을 가기 위해 기숙사에서는 늦어도 08:30에는 출발한다. 마지막 날에는 아침에 모든 짐을 챙겨 나와야 한다.
- 대회 사무국은 정식 취침 여부 및 취침 시 불편 사항 등을 체크하고, 환자 발생 시 병원에 연락하여 신속히 대처한다.

### ■ 식사 등

- 식사시간은 아침 07:30 ~ 08:30(기숙사 식당), 점심 13:00~14:00(교우회관 식당), 저녁 18:00~19:00(교우회관 식당)로 한다.
- 1일차 저녁식사는 명찰로 대신하고, 2일차 식사 때부터는 식권을 식당에 제출한다.
- 식사는 식권(5천원) 내에서 선택하며, 추가될 경우 비용은 참가자가 부담한다.
- 식당이동시 안내자의 지시에 따라 가급적 그룹별로 질서 있게 이동하며 안전에 주의한다.
- 식사시간을 준수하고, 식사의 양을 잘 조절하여 음식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 식사는 빠지지 말고 꼭 하여 다음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 간식은 2일차, 3일차 오후에 제공한다.
- 식수는 1일차에 각자에게 생수병을 제공하면, 그 병을 활용하여 정수기 물을 받아 각자가 해결한다.

### ■ 안전사고 예방 및 건강

- 안내자의 지시를 따라 이동시 질서를 지킨다. 특히, 고려대학교 행사장에서 숙소(안암 학사)로 이동할 때, 역으로 숙소에서 행사장으로 이동할 때 장난치지 말고 교통질서를 준수하여 교통사고 등 안전에 유의한다.
- 정해진 장소 외에 다른 건물에 무단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 숙소에서 지나친 장난을 삼가하고 취침 시간을 엄수하며 필요시 인원을 확인한다.
- 대학생이나 외부인과의 충돌을 피하도록 하며, 유혹이나 위협을 받지 않도록 신중하게 행동한다.
- 개인적으로 평소에 복용하고 있는 약품은 준비하여 정시에 복용한다.
- 참가자끼리 폭력이나 성추행 등을 발견하는 즉시 대회 사무국에 알려 조치를 받는다.
- 팀원 및 그룹 구성원들간에 서로에 대한 관심을 갖고 건강 및 안전 유무를 자주 확인하며 환자가 발생할 시 대회 사무국에 즉시 알린다.
- 건강상태를 스스로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시 대회 사무국에 연락하여 준비된 비상구급약을 복용하거나, 휴식을 취하거나, 응급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증세가 심할 경우 사무국은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하고 고려대학교 보건소 등 인근 병원의 조치를 받는다.

### ■ 소지품 관리

- 개인 세면류(치솔, 치약, 수건)는 각자가 준비하고 관리한다.
- 귀중품이나 과다한 액수의 금품 소지를 삼가며 낭비나 분실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사전 예방한다. 필요시 대회 사무국에 보관을 의뢰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분실에 대한 책임을 각자가 진다.
- 자신의 소지품에 이름을 표시하고 소지품을 잘 챙기며 소중히 관리한다.
- 자유로운 복장을 원칙으로 하되 단정하고 검소하며, 보온성이 있는 옷을 준비한다.
- 인화성 물질(성냥,ライター, 버너 등), 흥기류(장난감 무기류, 장난감 화약류 등) 등의 소지를 원칙적으로 금한다.

#### ■ 대회 사무국 연락처

- 행사진행 및 프로그램 : 010-5207-6525 (이인영)
- 참가자관리 및 숙소배정 : 010-2883-5520 (배운호)
- 물품, 건강 및 의료 : 010-2420-2405 (임경숙)
- 건물위치 및 길안내 : 010-8915-7225 (변재연)
- 고려대 법대 학사지원부 : 02 - 3290-1291

※ 사무국 비치물품 : 구급약품 상자, 종이, 프린터, 문구류, 음료, 행사 일정 등

## 숙소 배정

1F		2F	
구경모		신동범	진건고등학교
권성욱	광문고등학교 102	신민철	수원조원고등학교 201
권오선		신성식	이사벨고등학교
권혁성	한가람고등학교	신재호	서라벌고등학교
김동광	대원외국어고등학교 103	심주용	백석고등학교 202
김보성	도림고등학교	안병훈	대진고등학교
김유빈	대건고등학교	안태민	강원고등학교
김주현	고려대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104	양경철	환일고등학교 203
김준영	작전고등학교	양상훈	경구고등학교
김지웅	효원고등학교	오유상	서울광성고등학교
김진영	광주제일고등학교 105	오창수	부천고등학교 206
김철한	철원고등학교	윤상엽	강서고등학교
김태경	서강고등학교	윤성훈	효문고등학교
김현동	삼괴고등학교 106	윤태진	경남창원토월고등학교 207
김현진	구봉고등학교	이광명	수원고등학교
김현태	수원고등학교	이동준	울산중앙고등학교
김형우		이동훈	중동고등학교 208
김형준	다산고등학교	이동훈	환일고등학교
나정훈	광주제일고등학교	이상욱	부천고등학교
노성호	백석고등학교 108	이석영	한영외국어고등학교 209
도덕현	동탄반송고등학교	이석현	백석고등학교
류한수	이화여자사범대학부속이화금란고등학교	이성인	상산고등학교
민지홍	환일고등학교 109	이세령	춘천고등학교 210
박문수	광주동성고등학교	이순봉	서울태릉고등학교
박뿌리	백양고등학교	이용명	환일고등학교
박상희	한영외국어고등학교 110	이재석	효원고등학교 211
박석준	성안고등학교	이정훈	대원외국어고등학교
박성현	진건고등학교	이준봉	서울태릉고등학교
박영휴	강동고등학교 111	이진규	작전고등학교 212
박종민	강서고등학교	이찬양	광주진흥고등학교
박준철	철원고등학교	이후건	소사고등학교
박지원	대구외국어고등학교 112	장영민	양정고등학교 213
배정환	민족사관고등학교	장일훈	성안고등학교
서준호	민족사관고등학교	장주성	서울방승고등학교
손광현	중동고등학교 113	장현우	광주진흥고등학교 214
송성한	달구벌고등학교	장호성	다산고등학교

2F

3F

정상규	태장고등학교	
정상목	구봉고등학교	215
정신호	성남서고등학교	
정재화	삼괴고등학교	
정창우	민족사관고등학교	216
정태성	광주동성고등학교	
정해원	서일고등학교	
정현도	강동고등학교	217
조경민	보정고등학교	
조규석	서라벌고등학교	
조만성		218
조재연	현암고등학교	
조한준	상산고등학교	
주정호	서울국제고등학교	219
차형일	부천고등학교	
최동녘	하남고등학교	
최승혁	중동고등학교	220
최유진	한기람고등학교	
표세윤	중동고등학교	
표영신	광주진흥고등학교	221
한동훈	서라벌고등학교	
허세민	한국외대부속외국어고등학교	
허재호	대구외국어고등학교	222
홍부일	서울광성고등학교	
곽유신	사무국	
김명섭	사무국	223
김태홍	사무국	
김현석	사무국	
이동형	사무국	224
안지윤	한겨레기자단	

김철홍	국가인권위원회	
배윤호	국가인권위원회	301
변재연	국가인권위원회	
안효철	국가인권위원회	302
김선아	국가인권위원회	
류영주	국가인권위원회	303
김민아	국가인권위원회	
강근희	서일여자고등학교	
강류경	통영여자고등학교	306
강유미	인천명신여자고등학교	
곽온별	서울국제고등학교	
권민지	효원고등학교	307
권수현	대원외국어고등학교	
권순재	영파여자고등학교	
권신지	서울국제고등학교	308
권하은	호수둔여자고등학교	
김가영	부산국제외국어고등학교	
김경미	인천명신여자고등학교	309
김나래	선일 이비즈니스고등학교	
김린예	서울국제고등학교	
김명선	인천원당고등학교	310
김미나	가정고등학교	
김민경	경주여자고등학교	
김민주	운천고등학교	311
김보미	중흥고등학교	
김산희	부산국제외국어고등학교	
김성은	인천국제고등학교	312
김성진	성지고등학교	
김소영	선일 이비즈니스고등학교	
김소현	서일여자고등학교	313
김수연	부천여자고등학교	
김솔기	동남고등학교	
김신혜	일신여자고등학교	314
김영현	태안고등학교	

3F

4F

김예림	청주일신여자고등학교	
김예인	부여여자고등학교	315
김유진	광주상일여자고등학교	
김윤수	서울국제고등학교	
김은서	과천여자고등학교	316
김은선	부평여자고등학교	
김이슬	부산국제외국어고등학교	
김자명	동국대사범대학부속여자고등학교	317
김주은	경산하양여자고등학교	
김준영	백마고등학교	
김지선	세화여자고등학교	318
김진서	경북외국어고등학교	
김한나	상산고등학교	
김해솔		319
김현경	성심여자고등학교	
김형은	상산고등학교	
김혜지	거제육포고등학교	320
김희주	성심여자고등학교	
나선정	상일고등학교	
나현경	부명고등학교	321
남채경	서문여자고등학교	
류환임	대전괴정고등학교	
문소희	호남제일고등학교	322
박강연	금촌고등학교	
박귀란	한영외국어고등학교	
박다원	영신여자고등학교	323
박다은	하남고등학교	
박정연	송덕여자고등학교	
박지은	태장고등학교	324
박채영	하남고등학교	

박향	영파여자고등학교	
배우리	서울국제고등학교	401
백수민	서강고등학교	
서리나	이우고등학교	
서민주	용인고등학교	402
서지연	건국대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설서현	건국대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성예람	대전괴정고등학교	403
손다혜	대일외국어고등학교	
송선영	효원고등학교	
송슬비	경화여자고등학교	406
송유진	과천여자고등학교	
송혜원	광주수완고등학교	
신승희	대일외국어고등학교	407
신해성	서울국제고등학교	
신혜규	대원외국어고등학교	
심성희	인천원당고등학교	408
심인우	이화여대사범대학부속 이화금란고등학교	
심주연	세화여자고등학교	
심지은	부여여자고등학교	409
심효진	영덕고등학교	
안수현	영덕고등학교	
안예린	대진여자고등학교	410
양지애	인천국제고등학교	
양현정	목동고등학교	
양혜리	반송고등학교	411
예다진	부산국제외국어고등학교	
오슬아		
오정현	경화여자고등학교	412
유서영	대진여자고등학교	
유소영	명신여자고등학교	
윤고운	산마울고등학교	413
윤을정	목동고등학교	
이다영	영신여자고등학교	
이미경	경기외국어고등학교	414
이민경	성심여자고등학교	

## 4F

이상미	안곡고등학교	
이서우	서울광남고등학교	415
이선정	대전외국어고등학교	
이수연	서울국제고등학교	
이슬기	부명고등학교	416
이승연	호남제일고등학교	
이은주	부천여자고등학교	
이은호	호수돈여자고등학교	417
이정민	목동고등학교	
이주원	대구경화여자고등학교	
이지수	부평여자고등학교	418
이지수	야탑고등학교	
이지홍	경북외국어고등학교	
이진양	효문고등학교	419
이진희	중앙여자고등학교	
이한솔	부산국제외국어고등학교	
이항	태안고등학교	420
이현지	백신고등학교	
이호진	한국외대부속외국어고등학교	
임윤지	광문고등학교	421
임혜정	동두천외국어고등학교	
장경진	동두천외국어고등학교	
장민경	경기외국어고등학교	422
장유진	광주상일여자고등학교	
장인경	동두천외국어고등학교	
장재은	동남고등학교	423
장채윤	데레사여자고등학교	
장한빛	한영외국어고등학교	
전세정	개포고등학교	424
전진영	성지고등학교	

## 5F

정다원	백석고등학교	
정소연	호산고등학교	501
정숙현	부산외국어고등학교	
정아람	동국대사범대학부속여자고등학교	
정영은	서일여자고등학교	502
정유정	수주고등학교	
정현지	일신여자고등학교	
정희은	경북외국어고등학교	503
조단비	하남고등학교	
조은누리	부산국제외국어고등학교	
조은영	명신여자고등학교	506
조현아	거제옥포고등학교	
조혜민	대구경화여자고등학교	
조혜진	용인고등학교	507
주미영		
주현경	통영여자고등학교	
최성경	성심여자고등학교	508
최정아	보정고등학교	
추혜민	서울광남고등학교	
하수완	반송고등학교	509
한결	산마을고등학교	
한수아		
한예슬	금촌고등학교	510
한우림	호산고등학교	
한임연	청주일신여자고등학교	
한정화	부산외국어고등학교	511
함민지	동두천외국어고등학교	
함효진	경상여자고등학교	
황윤성	대전외국어고등학교	512
황은경	부천여자고등학교	
황은진	인천국제고등학교	
안인아	한겨레기재단	513
정현	한겨레기재단	
곽명선	사무국	
김자현	사무국	514
신민지	사무국	
지예리	사무국	515
이인영	국가인권위원회	

## 부록

## 유엔의 인권보장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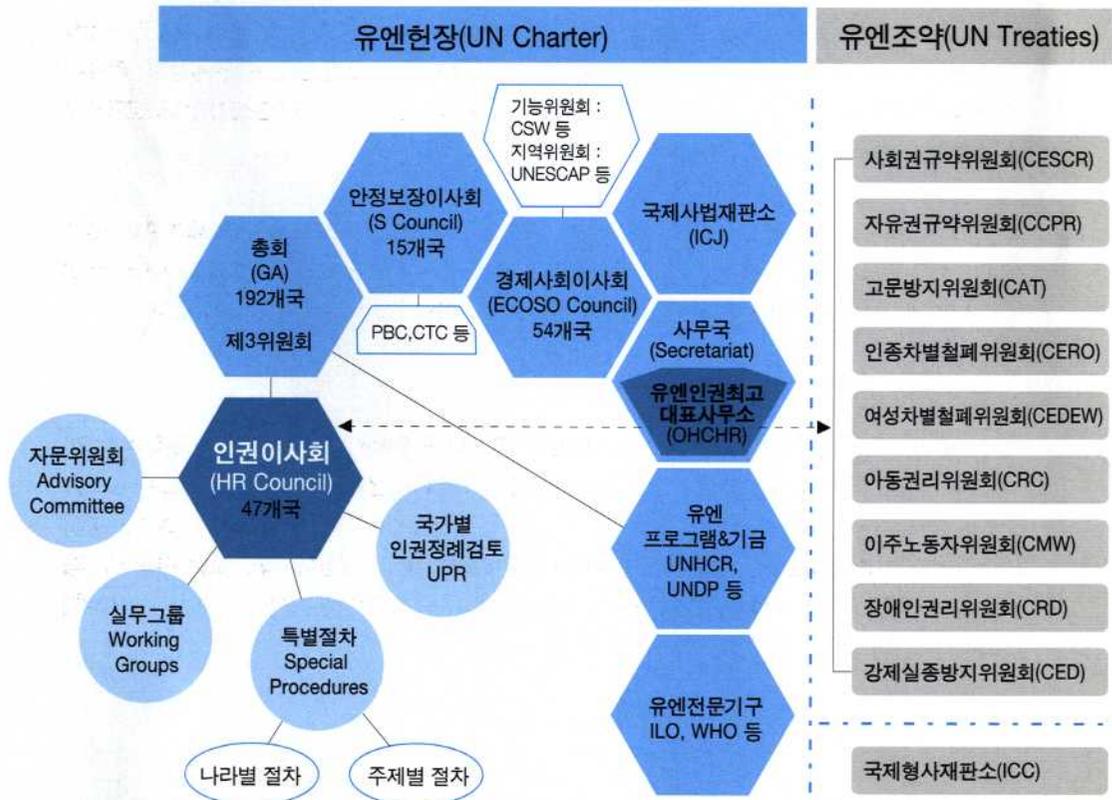
# 유엔의 인권보장제도<sup>1)</sup>

## 1. 유엔의 인권보호 시스템

유엔은 다양한 제도와 방법을 통하여 인권보장을 하고 있는 데 크게 두개 체계로 구성된다. 하나는 인권기준의 성안과 채택 뿐 아니라 그 이행을 책임지고 있는 「유엔 헌장」에 기반한 체계, 즉 헌장중심체계(Charter Body System)이고, 다른 하나는 주요 인권조약들의 이행을 위한 위원회, 즉 조약중심체계(Treaty Body System)이다. 이 두 체계는 유엔인권체계의 양대 기구적 틀을 형성하여 왔고, 보편적 차원의 인권증진과 보호 활동은 이 두 체계로 수렴되는 구조를 갖고 있다.

이외에도 유엔의 전문기구 역시 해당 기구의 설립목적에 따른 인권 공헌에 참여하고 있고, 인권 관련 세계회의는 국제적 컨센서스 형성에 이바지하고 있고, 중대한 인권침해에 책임 있는 자에 대한 형사책임을 묻는 국제형사재판소들이 있다. 유엔의 인권보호 시스템을 보면 다음과 같다.

유엔 인권보호시스템 UN Human Rights Protection System



## 2. 국제 인권규약

### 1 유엔 헌장

유엔이 인권을 규율하게 된 직접적 계기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가 저지른 잔혹행위이다. 국제사회는 "인권 에 대한 무시와 경멸이 인류의 양심을 짓밟는 야만적 행위"를 낳는 것을 보면서 "인권과 정의를 수호하기 위하여" 전쟁에 승리가 필수적이라고 역설하였다. 그리고 전쟁이 끝난 후, 그 전쟁을 통해 지켜내고자 했던 원칙들에 따라 새로운 국제질서를 세우기 위하여 유엔을 설립하였다.

「유엔 헌장」의 전문은 유엔의 주요 목표 중 하나가 "기본적 인권, 인간의 존엄 및 가치, 남녀 및 대소 각국의 평등 권에 대한 신념을 재확인" 하는 것이라고 선언하고 "더 많은 자유 속에서 사회적 진보와 생활수준의 향상을 촉진할 것을 결의" 하였다. 또한 제1조는 유엔의 주요 목적 중 하나가 "인종·성별·언어 또는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의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을 촉진하고 장려함에 있어 국제적 협력을 달성" 하는 것임을 밝히고 있다. 또한 제55조는 "인종·성별·언어 또는 종교에 관한 차별이 없는 모든 사람을 위한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편적 존중과 준수"를 촉진할 것을 명시하고, 제56조는 유엔의 "모든 회원국이 제55조에 규정된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기구와 협력하여 공동의 조치 및 개별적 조치를 취할 것"을 규정하였다.

### 2 국제인권장전

1948년 12월 12일 유엔 총회에서는 「세계인권선언」이 한 국가의 반대도 없이 채택되었는데, 이 선언은 헌장에 담긴 인권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인류의 「마그나 카르타」로 비유되는 「세계인권선언」은 수 세기에 걸쳐 인류가 투쟁을 통해 성취하고자 한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선언한 최초의 국제문서이다. 「세계인권선언」에 규정된 대부분의 권리는 오늘날 국제관습법의 일부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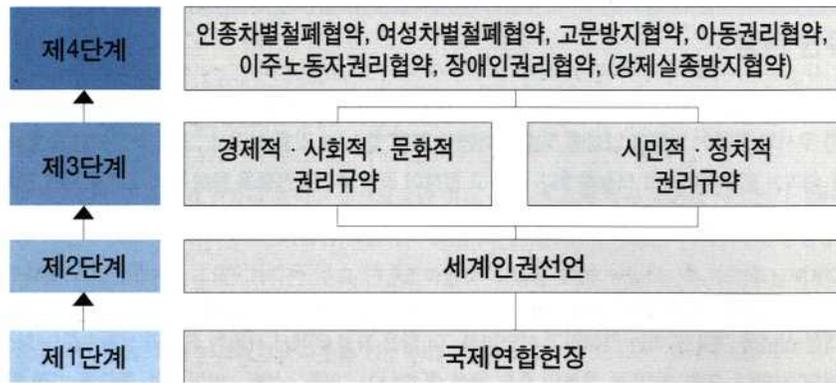
「세계인권선언」이 채택된 이후 선언에 담긴 인권을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약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의 결과, 「경제적·사회적·문화적권리규약」과 「시민적·정치적권리규약」이 1966년 채택되었고, 1976년 발효되었다. 이 두 규약과 「세계인권선언」은 국제인권의 증진과 보호의 근간을 이루는 국제인권장전으로 자리매김되고 있다.

### 3 주요 인권조약

유엔은 「세계인권선언」을 모태로 등장한 두 개의 국제인권규약 외에도 유엔은 수많은 국제인권기준을 성안하여 왔다. 「원칙」, 「선언」, 「헌장」, 「협약」 등을 통해 국제사회가 준거하여야 할 인권기준들이 제시되어 왔는데, 그 중 국가들에게 법적 구속력 있는 인권조약들이 구체적 특정 인권을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채택되고 시행되고 있다. 특정 집단의 인권증진과 보호에 관한 조약들로는 「인종차별철폐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 「고문방지협약」, 「아동권리협약」, 「이주노동자권리협약」, 「장애인권리협약」 등이 있다. 이외에도 채택은 되었으나, 2010년 1월 현재 미발효상태인 「강제실종방지협약」도 있다.

1) 「행정공무원 인권교육문제」, (국가인권위원회, 2009), 「입법분야공무원 인권교육 교재」, (국가인권위원회, 2008) 부분 발췌

유엔인권체계의 4단계 규범구조



\* (강제실종방지협약은 2010. 1. 1 현재 미발효)

### 3. 유엔의 인권보장제도

#### 1 유엔헌장에 근거한 인권보장제도

##### ① 총회

총회는 유엔의 모든 회원국이 참여하는 결정기관이고 인권과 관련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상당한 권능을 갖는다. 총회는 10개국의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고, 54개 경제사회이사회의 이사국을 선임할 수 있는 권능을 갖고 있고, 47개의 인권이사회의 이사국을 선임할 수 있는 권능을 갖는다. 「유엔 헌장」에 따라 '모든 인간을 위한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실현' 하기 위하여 총회는 '연구를 발의' 하고 '권고' 를 할 수 있다(제13조 제1항 b호). 또한 총회는 결의 형식으로 인권의 특정 국가의 인권침해상황을 토의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총회의 중요한 인권기어 중 하나는 인권규범과 기준의 정립인데, 유엔 설립 이후 총회는 승인 또는 결의의 형식으로 인권 기준을 담은 수많은 인권조약, 선언 및 기타 문서를 채택함으로써 국제인권법의 발전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여 왔다. 총회의 또 다른 중요한 기여는 각국이 인권조약상 의무를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적인 지원체제를 수립하고 기술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다. 경제사회이사회를 통하여 조약기구가 작성·제출한 보고서를 회람하며 정기보고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국가를 공표하는 등의 제재를 취한다. 무엇보다도 강력한 총회의 권능은 자신의 포괄적인 권한을 사용하여 세계의 대규모 혹은 체계적 인권침해상황에 대하여 토의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토의를 통하여 해당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전 세계적 관심을 고조시키고 여론을 형성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 ② 유엔 인권위원회(Commission on Human Rights, 2006년 인권이사회로 승격)

인권위원회는 1946년 경제사회이사회 산하기관으로 설치하였다. 인권위원회는 경제사회이사회에서 3년 임기로 선출하는 5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매년 봄 제네바에서 6주간 회의를 가졌다. 인권위원회는 2006년 4월 3일

유엔총회 결의 제60/251호에 의하여 '인권이사회' 로 대체될 때까지 전 세계적 인권보호에 관한 중추적인 임무를 담당하였으며 초기에는 「세계인권선언」의 성안과 채택을 주도하였다.

인권위원회는 전 세계의 인권상황 감시, 인권침해 사례조사, 인권에 대한 조사연구를 토대로 인권관련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 새로운 국제인권기준 설정, 총회나 경제사회이사회 등의 주요 기관이 부여하는 인권관련 과제를 수행한다. 또한 인권관련 국가활동에 대하여 각국에 필요한 자문서비스 및 전문기술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인권위원회는 전 세계의 인권침해상황을 조사하기 위한 다양한 절차를 발전시켜 왔다. 이를 특별절차라고 부르는데 국가별 수임사항과 주제별 수임사항이 있다.

차별금지과 소수자 보호에 관한 소위원회는 경제사회이사회와 인권위원회의 보조기관으로 1946년 설립되었다. 이 위원회의 명칭은 1999년 인권증진보호소위원회로 변경되었다. 인권위원회가 인권이사회로 대체되는 과정에서 인권소위원회의 임무와 체계 그리고 기능은 모두 이양되었으며, 이양 후 1년간 한시적인 임무를 수행한 후 소멸하였다.

인권소위원회는 인권위원회와 달리 각국 정부가 추천한 전문가들 중에서 지역적 안배의 원칙에 따라 선출된 26명 위원이 독립된 개인자격으로 활동하였다. 인권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4년이고, 2년마다 전체의 반인 13명이 선거로 교체된다. 해마다 8월에 3주간 제네바에서 개최된다. 인권소위원회는 일종의 두뇌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새로운 인권규범 및 기준의 성안, 기존규범의 해석 및 적용, 회원국의 인권조약 비준 촉구, 조약이행의 감시 등의 역할을 수행하거나, 경제사회이사회나 인권위원회가 위임한 인권관련 과제를 수행하였다.

##### ③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

2005년 세계정상회의에 보고된 유엔 사무총장 보고서는 인권위원회에 대한 신뢰도 부족과 전문성 부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인권이사회 설립을 제안하였고, 이 회의에서 관련 협의가 진행되었다. 2006년 4월 3일 유엔총회 결의 제60/251호에 의하여 기존의 인권위원회를 대체하는 새로운 유엔의 인권전담기관으로서 인권이사회가 유엔 총회 보조기관으로서 설립되었다.

총회의 보조기관이 된 인권이사회는 과거 인권위원회와 비교하여 그 위상이 강화되었고 그 권한이 확대되었다. 인권이사회는 총 47개 이사국으로 구성되며 총회에서 회원국의 절대 과반수인 96개국 이상의 지지를 받아야 이사국으로 선출된다. 이사국 중 중대한 인권침해를 자행한 국가에 대해서는 총회 2/3 이상의 결의에 의해 자격 정지가 가능하다.

이사국을 선출하는 총회 회원국들은 이사국 선출 과정에서 희망국의 자발적 공약들을 검토할 수 있고, 선출된 이사국은 임기 중 자국의 인권상황에 대한 보편적 정례검토를 받아야 한다. 모든 회원국들에게 적용되는 보편적 정례검토제도는 모든 국가들의 인권의무 이행에 대한 검토를 정기적, 종합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 이 절차의 도입으로 과거 정치적 이유에 의한 국가들의 인권위원회의 검토 회피현상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다. 인권이사회는 인권위원회와는 달리 자주 회합을 갖는다. 인권위원회가 일 년 한차례 6주간 회기를 갖는 것과는 달리 유엔인권이사회는 매년 3회 매회 10주간의 정기회의와 필요에 따라 특별회의가 개최된다.

2008년 10월 현재 이사국

지역	국가(괄호 안은 임기)
아프리카	Angola(2010), Burkina Faso(2011), Cameroon(2009), Djibouti(2009), Egypt(2010), Gabon(2011), Ghana(2011), Madagascar(2010), Mauritius(2009), Nigeria(2009), Senegal(2009), South Africa(2010), Zambia(2011)
미주	Argentina(2011), Bolivia(2010), Brazil(2011), Chile(2011), Cuba(2009), Mexico(2009), Nicaragua(2010), Uruguay(2009)
아시아	Bahrain(2011), Bangladesh(2009), China(2009), India(2010), Indonesia(2010), Japan(2011), Jordan(2009), Malaysia(2009), Pakistan(2011), Philippines(2010), Qatar(2010), Republic of Korea(2011), Saudi Arabia(2009)
서유럽	Canada(2009), France(2011), Germany(2009), Italy(2010), Netherlands(2010), Switzerland(2009), United Kingdom(2011)
동유럽	Azerbaijan(2009), Bosnia and Herzegovina(2010), Russian Federation(2009), Slovakia(2011), Slovenia(2010), Ukraine(2011)

④ 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the Human Rights Council Advisory Committee)

2006년 3월 15일 유엔총회 결의 60/251에 의해 유엔인권위원회 자문(Think-Tank)역할을 했던 인권소위원회(Sub-Commission)가 인권자문위원회(Advisory Committee, AC)라는 이름으로 개편되었다.

인권자문위원회는 전체적인 유엔 인권기구 개편의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2006년 3월 15일 유엔총회 Res.60/251 내용 중 '전문가 자문' (Expert Advice)을 둔다는 내용이 있었다. 하지만 인권이사회 이사국에서는 아예 자문위원회를 만들지 않을 생각이었던 것처럼 보였다. 미국이 자문위원회가 만들어 지는 것 자체를 강하게 반대했으나, 제3세계 국가들과 비정부기구들의 노력으로 자문위원회가 가능해졌다. 2006년 12월 인권이사회에서 Expert Advisory Body로 이름을 변경했으나 2007년 6월 최종적으로 Advisory Committee로 결정되었다.

소위원회의 변화 과정을 살펴본다면, 1947년 소수자 보호라는 특정 주제로 회의가 열리면서 시작되었다. 학자, 연구자를 중심으로 자문역할을 해왔었고 인권이사회에 제안 및 요청, 결의안 채택까지 할 수 있었다. 단순한 연구 조사를 넘어서 정치적 역할까지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소위원회는 민간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비정부기구들에게 환영을 받았었다.

비정부기구 입장에서는 정부로 구성된 인권위원회에 의제를 제시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웠기 때문에, 소위원회 민간전문가들에게 접촉하여 의제를 제시 했던 것이다. 소위원회가 그나마 유엔에서 정부의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이었다. 소위원회 위원이 되는 과정에는 정부 추천이 필요하지만 위원이 된 이후에는 독립전문가로서의 역할을 하는 위원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⑤ 보편적 인권상황 정례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 일명 UPR)

인권이사회가 구 인권위원회와 차별성을 가지는 제도 가운데 하나가 국가별 보편적 정례 인권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 일명 UPR)제도이다. UPR 제도는 인권이사회가 192개 유엔 회원국 인권상황을 유엔 헌장, 세계인권선언, 각종 인권협약 등에 비추어 정례(4년 주기)검토하는 활동이다. 이는 각 국가의 인권상황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다.

매년 2주의 기간동안 검토회의를 3회 개최(회기당 16개국 검토)하여 총 48개국씩 검토를 하기 때문에 각 국가에 대한 검토는 4년마다 실시(192 ÷ 4 = 48)된다. 각국별 검토순서는 현행 이사국 및 자발적 희망국 우선, 지역그룹별 안배, 이사국 및 옵저버 국가 안배, 알파벳 순 원칙하에 추첨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구 인권위원회가 특정 국가를 공개 비난하는 정치화 논란이 지속됨에 따라, 06.6 출범한 인권이사회는 모든 국가(universal)의 인권상황을 정기적(periodic)으로 공동 검토한다는 취지에서 새로이 도입하였다. 이는 특정국가를 비난하기 보다는 실질적 인권 개선을 위한 능력 배양 및 자문 제공에 중점을 두고 있다. 검토절차를 보면 다음과 같다.

☐ 인권이사회에서 요청하여 작성하는 문서

- 인권보호제도, 성과, 제약 등 관련 해당 정부 작성 보고서 (20쪽 이내)
- 제출정보 준비 시 각국 내에서 모든 관련기구들과 광범위한 논의를 거칠 것을 장려
- 유엔최고대표부에서 준비하는 정보(10쪽이내)
- 협약 기구, 특별 절차 등 보고서를 OHCHR이 요약한 문서(10쪽 이내)
- 여타 관련 이해관계자(stakeholder)가 제공하는 정보(OHCHR이10쪽 이내)

☐ 정부 등이 작성한 보고서를 토대로 한 질의·응답, 권고 및 보고서 채택(3-4시간 소요)

- 모든 문서는 보편적 정례검토 실무그룹회기 6주전까지 제출되어야 함.
- 관련기구 보고서의 경우 OHCHR이 자료취합 유엔 공용어로 번역하는데 걸리는 시간 고려
- 각 검토대상 국가당 실무그룹 검토회의 시간은 3시간, 실무그룹 보고서 채택 30분

☐ 검토 기관: 47개 이사국으로 구성된 working group 설치(회의 주제: 이사회 의장)

- 옵저버 국가도 참여. 발언 가능(NGO는 참관 가능하나 발언 불가)
- 추첨으로 선출된 서로 다른 지역 그룹 3개 이사국으로 보고관 그룹(Troika)구성, 상기 워킹그룹 보고서 준비 업무 담당

☐ 검토 최종 결과: 인권이사회 본회의 (Plenary)에서 채택(1시간)

- 각검토국가당 최종 검토결과 문서 논의 및 채택 1시간(NGO 발언할 수 있음)
- 검토 회의 과정요약, 권고, 결론, 자발적 공약 등 포함.
- 인권이사회는 UPR에 대한 지속적 비협력국 문제에 대처(address)

[참고]

- 1차 UPR(08.4.7-18) 심의 대상국(16개국, 순서별): 바레인, 에쿠아도르, 튀니지, 모로코, 인도네시아, 핀란드, 영국, 인도, 브라질, 필리핀, 알제리, 폴란드, 네덜란드, 남아공, 체코, 아르헨티나
- 2차 UPR(08.5.5-16) 심의 대상국(16개국, 순서별): 가봉, 가나, 페루, 과테말라, 베냉, 한국, 스위스, 파키스탄, 잠비아, 일본, 우크라이나, 스리랑카, 프랑스, 통가, 루마니아, 말리

⑥ 유엔인권최고대표(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유엔인권최고대표(전 유엔인권고등판무관) 제도는 1993년 비엔나 세계인권대회에서 유엔 인권보장제도의 전반적인 개선과 효율성 증진 방안으로 논의되었고 민간단체는 물론 많은 정부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았다. 즉 인권최고대표제도는 비엔나 인권대회의 가장 큰 결실이라고 할 수 있다. 1993년 제48차 유엔총회는 '모든 인권의 증진과 보호를 위한 최고대표'에 관한 결의안 채택을 통해 '비엔나선언과 행동계획(VDPA)'을 승인하고 인권최고대표제도의 신설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다음해인 1994년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제네바에 본부를 설치하고 정식 출범하였다.

인권최고대표의 임무로는 모든 인권의 증진과 보호, 인권증진과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의 강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전반적인 감독 수행, 발전권을 포함한 모든 시민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의 보호와 증진, 인권실현에 장애가 되는 요소들의 제거와 예방, 인권기구와 조약감시기구의 지원 등을 들 수 있다. 인권최고대표는 인권이사회와 유엔경제사회이사회에 자신의 임무에 대한 연차보고를 할 의무도 지닌다.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유엔 인권이사회 사무국 역할을 하는데 인권이사회에서 채택한 각종 결의안 이행을 보조 및 지원하고 결의안의 성격에 따라서는 직접 집행하는 기능을 하기도 한다.

1994년 설립된 이 제도로 유엔은 이전에 흩어져있던 유엔 내의 다양한 인권관련 활동을 조정 및 강화하고 다양한 국제적 인권 기준을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제네바에 본부가 있으며 상근 직원은 약 560 여명이다. 이중 약 280여명이 제네바 본부에 근무하고 나머지는 뉴욕의 연락사무소를 비롯하여 전세계 약 40개 지역과 국가에 있는 현지사무소에서 일하고 있다. 아시아의 경우 방콕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경제사회이사회(ESCAP)에는 인권최고대표의 특별대표가 상주하고 있다.

인권최고대표는 유엔 사무총장에 의해 임명되는데 초대 최고대표는 전 에콰도르 외무부 장관이었던 호세 아얄라 라소(Jose Ayala-Lasso)가 1994년부터 1997년까지 역임했다. 제2대 최고대표로는 인권변호사 경력의 전직 아일랜드 대통령 출신인 메리 로빈슨(Mary Robinson)이 2002년까지 5년간 활동을 하였다. 라소 대표가 최고대표사무소의 기초를 놓았다면 로빈슨 최고대표는 이를 토대로 주춧돌을 놓았다고 비유할 수 있을 정도로 로빈슨 최고대표의 정력적인 활동으로 인해 국제정치에서 인권의 위상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아졌고 판무관사무소의 실무역량 또한 크게 강화되었다. 제3대 최고대표는 유엔직원 출신으로 유엔동티모르과도행정기구(UNTAET)의 대표였던 브라질 출신의 세르지오 비에라 드 멜로(Sergio Viera de Mello)가 임명되었으나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의 유엔특사로 이라크에서 활동하다가 지난 2003년 8월 19일 바그다드 유엔본부에 대한 폭탄테러 사건으로 순직했다. 그 후 Bertrand Ramcharan가 뒤를 이어 2004년 6월까지 인권최고대표를 역임하였고, 2004년 7월부터 2008년 8월까지 Louise Arbour 역임하였고, 2008년 9월 1일부터 Navanethem Pillay가 맡고 있다.

2 인권조약에 근거한 인권보장제도

각각의 국제 인권조약은 조약 가입 당사국의 의무 이행을 감시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다. 보통 위원회라고 부르는데 위원회의 위원 수는 보통 10명에서 23명 사이이고 임기는 4년이다. 위원은 조약 가입 당사국이 추천하고 선출한 인권전문가로 구성되는데 정부대표가 아닌 개인 자격으로 일한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조약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는 사무국 역할을 한다. 여성차별철폐협약위원회는 해마다 2회 뉴욕에서 개최되며 다른 위원회는 매년 2-3회 제네바에서 열린다. 2002년부터 모든 위원회의 대표가 참여하는 연례 정기회의가 열리는데 여기서 각 위원회가 직면한 문제점과 공통의 관심사가 논의된다.

국제인권조약 위원회현황

조약이행감시기구	근거조약	임기와 위원수	보고서제출 연례회의	한국가입
자유권규약위원회(인권이사회)(HRC)	자유권규약	4년 임기 18명	5년 3회	1990년
사회권규약위원회(CESCR)	사회권규약	4년 임기 18명	5년 2회	1990년
인종차별철폐협약위원회(CERD)	인종차별철폐협약	4년 임기 18명	2년 2회	1979년
여성차별철폐협약위원회(CEDAW)	여성차별철폐협약	4년 임기 23명	4년 2회	1985년
고문방지협약위원회(CAT)	고문방지협약	4년 임기 10명	4년 2회	1995년
아동권리협약위원회(CRC)	아동권리협약	4년 임기 10명	5년 3회	1991년
이주노동자권리협약위원회(CMW)	이주노동자권리협약	4년 임기 10명	5년 미정	미가입

각국의 정부는 인권조약을 비준 또는 가입할 때 특정 조항의 이행을 유보할 수도 있다. 일단 조약을 비준 또는 가입하면 조약 당사국은 정기적으로 국가보고서(state report)를 제출하는 의무가 부과되고 조약이행감시기구의 당사국 보고서 심의에 참석할 의무를 지닌다. 보고서는 보통 당사국이 조약상의 인권을 보장하는 국내법과 제도를 설명하고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취한 조치에 대한 설명을 담고 있다. 조약 당사국은 비준한지 1년 내에 첫 보고서를 제출하고 이후에는 보통 2년에서 5년을 주기로 제출한다.

감시기구가 당사국의 보고서를 심의할 때 국제기구와 민간단체는 해당 당사국의 인권상황과 정부의 의무이행을 평가하는 정보를 위원회에 제공한다. 비정부기구는 직접 위원들에게 보고서를 설명하는 기회를 가질 수도 있다. 위원회는 당사국 정부가 제출한 보고서 심의 중 당사국 정부 대표와 질의응답을 통해 조약의무 이행의 여부를 판단한다. 심의는 보통 하루에서 하루 반 정도 걸리며 위원회는 심의 후 위원회의 관심,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제안을 담은 최종 권고안(concluding observations/comments)을 발표한다. 한편 위원회는 조약의 주요 조항이 지닌 의미에 대해 해석을 제공하는 일반논평(general comments)을 채택하기도 한다.

정기적인 국가보고서 제출 및 심의제도가 해당 국가의 인권정책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하는 계기라면 개인 통보(individual communication)제도는 개인이 자신의 인권침해를 국제인권조약을 통해서 구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 밖에도 국가간 고발제도가 있다. 예를 들어 자유권규약에 따르면 규약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규약 당사국을 대상으로 다른 당사국은 개선과 시정을 촉구하는 고발을 할 수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간 고발제도는 대다수 국가가 인권문제로 외교적 마찰을 꺼리기 때문에 거의 활용되지 않아 유명무실한 상태이다.

